

그들을 조국의 품으로

6·25 전사자 발굴유해 신원확인을 위한

# 유가족 DNA 시료채취 업무안내서



국유단 누리집



국유단 인스타그램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MND Agency for KIA Recovery & Identification



그들을 조국의 품으로

6·25 전사자 발굴유해 신원확인을 위한

# 유가족 DNA 시료채취 업무안내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MND Agency for KIA Recovery & Identification

## 70년의 기다림, 이제는 만남의 약속으로 답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일상의 평화와 번영은 70여 년 전, 이름 모를 골짜기와 능선에서 조국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던진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나긴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차가운 땅속에 홀로 남겨진 영웅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계십니다.

유가족분들에게 시간은 1950년 그날에 멈춰있을지도 모릅니다. “살아만 돌아오라”던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는 어느덧 백발이 된 자녀들의 눈물 섞인 기다림이 되었습니다. 전사자의 유해를 찾아 신원을 확인하는 일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을 정리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약속이며, 평생을 그리움 속에서 살아오신 유가족분들의 가슴 속 깊은 한을 풀어드리는 거룩한 소명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전사자와의 추억을 간직하고 혈연적으로 가장 가까운 직계 가족과 형제자매분들이 점차 고령화되면서, 영웅들을 가족의 곁으로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건강하실 때 유전자 시료를 확보하는 것만이 산야에 홀로 계신 호국영웅들의 넋을 온전히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유가족 DNA 시료 채취’는 단순히 업무의 한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사자를 기억하는 마지막 목소리에 응답하는 일이며, 70년의 이별을 끝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지켜내는 숭고한 실천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발간하는 6·25 전사자 유해 신원확인을 위한 「유가족 DNA 시료 채취 업무 안내서」는 현장에서 헌신하는 담당자들이 유가족 한 분 한 분을 내 부모, 내 형제처럼 정성껏 모실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시료 채취의 기술적 정확성을 넘어, 유가족의 아픔을 보듬는 따뜻한 배려와 예우가 이 안내서를 통해 현장에 온전히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마지막 한 분의 유해를 찾아 가족의 곁으로 모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 바친 희생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숭고한 가치임을 행동으로 직접 증명하겠습니다.

이 안내서가 호국영웅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을, 유가족분들에게는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소중한 길잡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26년 4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 드림



##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소개

###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이란? 06

사업의 의의, 유해발굴 / 신원확인 절차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추진결과



## DNA 시료채취 업무 안내

### DNA 시료채취 업무 절차(공통) 11

유가족 DNA 시료채취 포상 안내  
DNA 시료채취 대상 유가족 선정  
6·25 전사자 유가족 DNA 시료제공 참여방법  
채취 기관 대상별 개괄  
채취 기관별 업무요약  
전사자 카드(전사자 찾기신청서) 작성  
유전자검사 동의서 작성  
전사자 추가정보 자료 작성  
DNA 시료채취 요령  
DNA 시료 발송관리(각종 서류 발송)

### 기관별 중점 확인사항 35

보건소(지소) / 군병원 / 보훈병원 / 적십자병원  
병무청(병역판정검사장)  
군 부대  
예비군부대(지역대, 읍·면·동대, 기동대)

### DNA 시료채취 우수기관 선발 59

### DNA 시료채취 업무 간 유의 사항 61

### DNA 시료채취 업무 Q & A 66



## 부록

### 6·25전쟁 개관 88

### 6·25전쟁 주요 전투상황 90

### 만화로 보는 쉽고 빠른 6·25전사자 유가족 DNA 시료채취 91

### 6·25 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101

DNA 시료채취 사업홍보 애니메이션 영상

유해발굴감식단 인터넷 홈페이지 : 홍보마당 → 영상 다운로드 활용

(홈페이지 주소 <http://www.withcountry.mil.kr>)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영원한 책무입니다.



마지막 한 분을 모시는 그날까지 ...  
Until we find all them



#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소개

조국은 거래와 자유를 위해 산화한  
여러분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 
- › 사업의 의의, 유해발굴 / 신원확인 절차
  - ›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추진결과
-



#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이란?

## 사업의 의의

6·25 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쳤으나 미처 수습되지 못한 채 아직도 이름 모를 산야에 홀로 남겨진 12만 3천여 분 호국용사들의 유해를 찾아 국립 현충원에 모시고 있는 국가적 숭고한 호국보훈 사업입니다.

## 유해발굴 / 신원확인 절차

### 1 / 조사·탐사 (Investigation . Site Survey)

#### 전투기록 분 석

- 6·25 전쟁 전투 관련 기록물
- 참전용사 유해소재 관련 증언
- 병적(兵籍) 관련 기록물

#### 현장탐사

- 전투지역 현장탐사  
→ 전투흔적(개인호·교통호) 식별
- 지역주민 증언 및 유해소재 제보획득

#### 발굴지역 선 정

- 현장조사 결과분석  
→ 유해발굴 가능성 평가
- 각 지역별 유해발굴 가능지역 선정
- 연 단위 유해발굴 5개년 계획 발전



### 2 / 발굴·수습 (Recovery)

#### 개 토 식

- 유해발굴의 시작을 알리며, 안전을 기원

#### 발 굴

- 기본토층 굴토 : 아전부대 병력 (연 인원 10만명)
- 유해 식별시 : 문화재 발굴기법 적용  
정밀발굴 (전문인력)
- 발굴시 전사자 종합정보체계 이용  
실시간 자료 입력

#### 수 습 및 임시봉안

- 최고의 禮를 갖춰 수습
- 전통방식 옹동나무관 입관 (태극기 관포)
- 발굴지역과 가까운 군부대  
임시 감식소 설치
- 기초 감식 → 임시 봉안소 안치



### 3 / 유해감식 · 분석 (Identification and Analysis)



#### 유해봉송 및 등록

- 중앙감식소로 봉송, 유해 등록 번호 부여
- 유해특징(인종, 성별, 연령, 원인 등), 유품 분석, 피아 판단 등

#### 정밀감식

- 광학장비, 미세영상확대장치 분석장비 등 활용
- 법의학적 분석
- 유전자 검사용 유해 DNA시료채취 (골밀도 고려 3X5 cm)

### 4 / 유전자 분석 (DNA Analysis)



#### DNA 검사

- DNA 검사 : 유해와 유가족간 유전자 비교 및 분석을 통한 신원 확인
- 유전자 검사 기법
  - A-STR 및 A-SNP 친자 및 혈연관계 확인
  - mtDNA : 모계혈족 확인      - Y-STR : 부계혈족 확인

### 5 / 유가족 찾기 (Family Outreach)



#### 전사자 유가족 찾기 / DNA 시료채취

- 가까운 보건소(지소), 군병원, 예비군부대, 병무청, 보훈병원(요양원), 적십자병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센터(서울현충원 내), 방문채취
- 생업이 바쁘거나 거동이 불편하여 방문 제한시 유가족담담당이 직접 자택방문 채취 또는 키트발송

### 6 / 신원확인 · 후속조치 (Identification and Follow Up Action)



#### 국군 전사자

-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 (신원확인 통보)
  - 신원확인 : 서울대전현충원 인장 (봉안)
  - 신원미확인 : 신원확인 시까지 유해 보관소에 보관 (신원확인센터)

#### 국군 전사자 외

- UN군 유해 : 재한 UN기념공원인장 / 해당국 인계
- 중국군 유해 : 인도주의적 차원 유해 송환



##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추진결과

(’25. 12. 31. 기준)

### 개요

- 발굴 기간** 전반기 3월~7월  
후반기 9월~11월
- 투입 인원** 30~35개 부대  
연 인원 10만 여명
- 발굴 지역** 30~35개 지역  
(DMZ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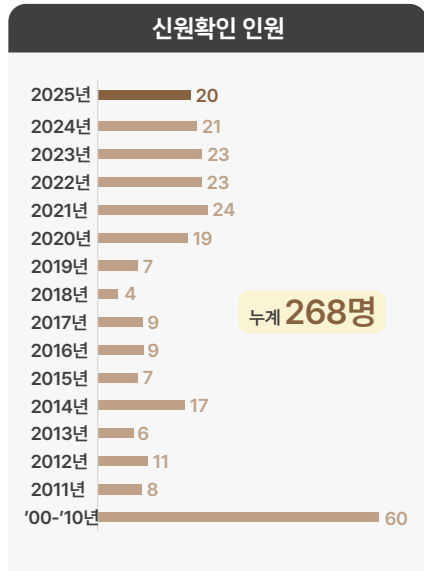
### 유해발굴 성과

- 발굴 유해** (누계 11,522구)
- 국군** 11,488구
- UN군** 34구

###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

전사자 **75,987명**의 유가족 유전자 시료 확보

구분	시료채취 참여자
<b>계</b>	<b>119,418명</b>
<b>+</b> 보건소(지소)	<b>16,856명</b>
<b>병원</b>	<b>4,881명</b>
<b>군 부대</b>	<b>28,421명</b>
<b>기동(탐문담당)</b>	<b>59,099명</b>
<b>방문</b>	<b>1,514명</b>
<b>순회</b>	<b>8,647명</b>





# DNA 시료채취 업무 안내

- 
- › DNA 시료채취 업무 절차(공통)
  - › 기관별 중점 확인사항
  - › DNA 시료채취 우수기관 선발
  - › 시료채취 업무 간 유의사항
  - › DNA 시료채취 업무 Q & A
-



유가족들은 전쟁으로 사랑하는 혈육을 잃은 아픔을  
가슴속에 품은 채 70여 년을 지내왔습니다.

6·25 전사자 유해발굴 및 신원확인인 보건소, 군병원, 병무청,  
보훈병원, 군 관례자 등의 사명감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아직 돌아오지 않은 혈육을 가족과 만나게 합니다.

---

# DNA 시료채취 업무 절차 [공통]

---

- 
- › 유가족 DNA 시료채취 포상 안내
  - › DNA 시료채취 대상 유가족 선정
  - › 6·25 전사자 유가족 DNA 시료 제공 참여방법
  - › 채취 기관 대상별 개괄
  - › 채취 기관별 업무 요약
  - › 전사자 카드(전사자 찾기신청서) 작성
  - › 유전자검사 동의서 작성
  - › 전사자 추가정보 자료 작성
  - › DNA 시료채취 요령
  - › DNA 시료 발송관리(각종 서류 발송)
-



## 유가족 DNA 시료채취 포상 안내

### ▶ 시행배경

6·25전사자 유해의 신원확인에 있어 가장 중요한 유가족 DNA시료 확보가 미흡함에 따라 신원확인의 획기적 성과를 달성하고자 유가족 DNA시료 제공에 따른 포상 시행

### ▶ 관련근거

국방부 병영정책과-1782('25. 3. 19.)

국방가족 52만과 함께하는 「6·25 미수습 전사자 유가족 찾기」 추진계획 시달

국방부 병영정책과-7795('25. 10. 20.)

「공무원과 함께하는 6·25 미수습 전사자 유가족 찾기(시료채취)」 캠페인 안내

### ▶ 포상내용

구분		국방가족	공무원/일반인
①	유가족 DNA 시료 채취 시 (미수습 전사자 증빙서류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만원 상당 기념품(상품권)</li> <li>위로.포상휴가 (3박 4일 권장 / 최대 6박 7일)</li> <li>* 장병 : 위로휴가</li> <li>* 군공무원 : 포상휴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만원 상당 기념품(상품권)</li> <li>무료 건강검진 (보건소, 군·적십자병원 채취자)</li> <li>·(권장) 시료채취일 특별휴가</li> <li>·(권장) 시료채취자 포상휴가</li> </ul>
	유가족 DNA 시료 채취 기여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상휴가(2일) * 최대 4일</li> <li>* 시료채취 1명 : 2일</li> <li>* 시료채취 2명 이상 : 4일</li> </ul>	-
② 전사자 기준 최초 시료채취자 (미수습 전사자 증빙서류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만원 포상금 지급 (계좌 입금)</li> <li>* 전사자 기준, 최초로 유전자 시료채취에 참여한 유가족 1명에게만 심의 후 지급(다른 유가족이 既채취한 경우에는 미해당)</li> </ul>	
③ 신원확인시 (유해-유가족 DNA 일치)		1,000만원 포상금 지급 (유가족 대표, 계좌 입금)	

\* 단,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신청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포상금 지급대상인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既지급된 포상금을 환수조치함

## ○ DNA 시료채취 대상 유가족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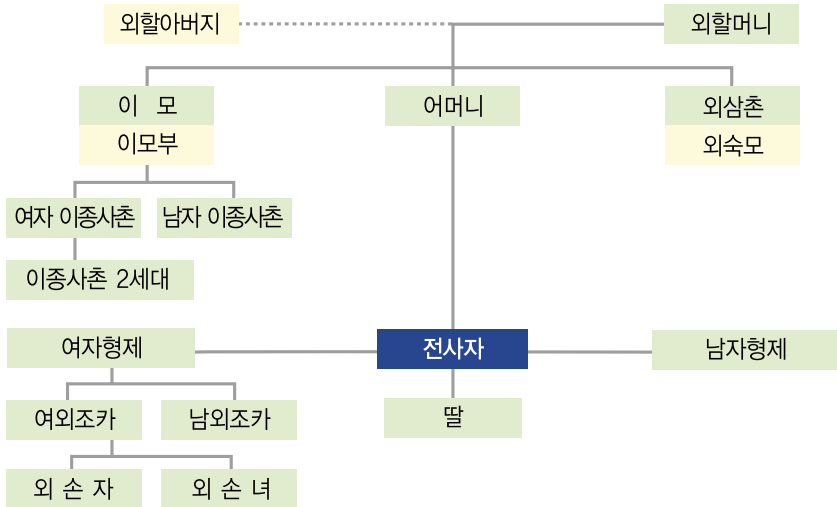
▶ DNA 시료채취 대상자는 유전자 검사방법(3종 : mt-DNA, Y-STR, A-STR)에 따라 나눠지게 되며 검사 대상자의 순위는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1순위 : 전사자의 남자형제, 아들, 아버지
- \* 2순위 : 전사자의 여자형제, 딸, 어머니
- \* 3순위 : 3촌 관계(생질, 외숙 등), 이모, 친손자, 남자 친조카
- \* 4순위 : 고모, 친손녀, 여자 친조카 등

\* DNA 시료채취 대상자는 검사방법에 따라 전사자 1명당 유가족 최대 부·모계 각 2명까지 DNA 시료채취가 가능합니다.

▶ DNA 시료채취 대상 가계도

【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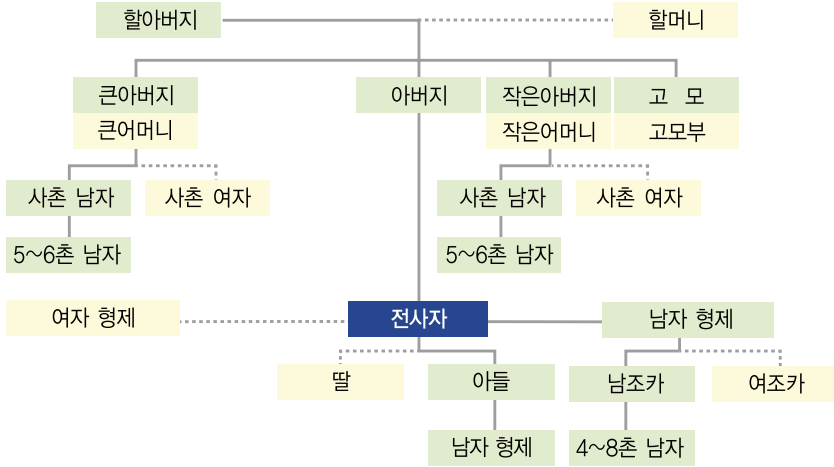


\*          표시는 DNA 시료채취 가능자임.

(양자 등 혈연관계가 아닐 경우 DNA 시료채취 불가 / 가족관계는 전사자 중심으로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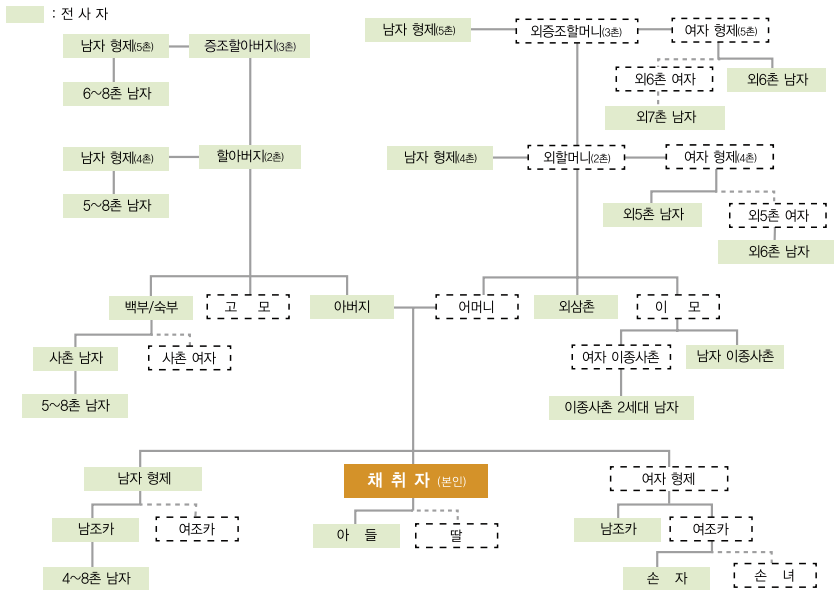
**【부계】**



※      표시는 DNA 시료채취 가능자임.

(양자 등 혈연관계가 아닐 경우 DNA 시료채취 불가 / 가족관계는 전사자 중심으로 정리)

**【채취자 기준】**



▶ 유전자 검사유형

구분	mt-DNA (미토콘드리아검사)	n-DNA (핵유전자 검사)	
		Y-STR (성염색체 검사)	A-STR (상염색체 검사)
유전 양상	모계	부계 (남자만 해당)	1세대 부모 각 1/2
개인 식별력	상대적으로 낮음	상대적으로 낮음	매우 높음
검사 성공률	유해	약 98%	약 70%
	유가족	100%	100%

※ 이 모든 유전자검사는 양자 등 부모와 피를 나누지 않은 자녀의 경우 검사가 불가합니다.  
반드시 DNA 시료채취 전 전사자와 유가족과의 가족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전사자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



▲ 유해 DNA시료 채취



▲ DNA 추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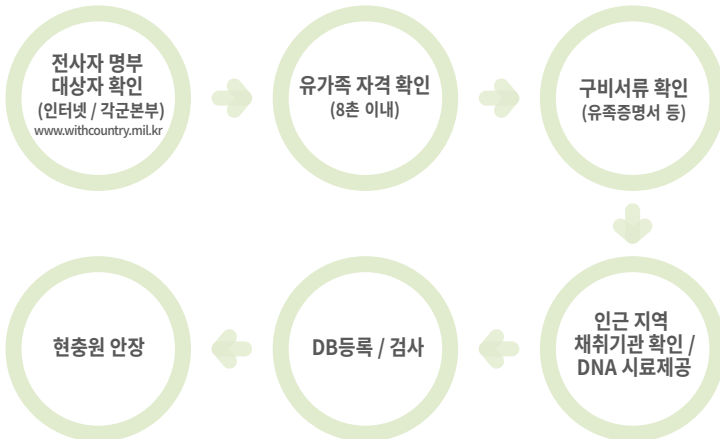
## 6·25 전사자 유가족 DNA 시료제공 참여방법

### 목적 왜, Why

6·25 미수습 전사자 발굴유해 신원확인 후  
유가족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함.

하루라도 빨리 DNA 시료제공 / 참여가 절실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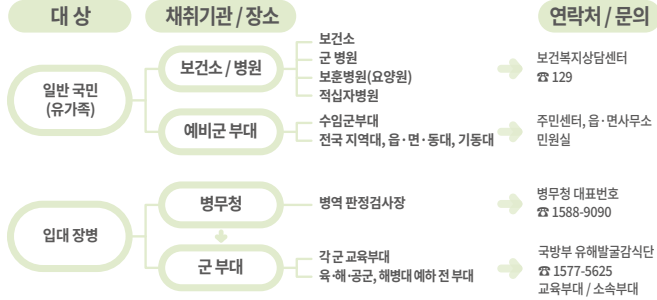
### 절차 Proc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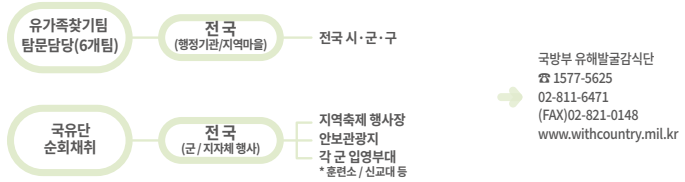
※ 연 1회 검사결과 통보

## 참여방법

### 유가족께서 찾아오시는 방법



### 국방부에서 찾아가는 방법



## 관심/협조사항

### 보건소/병원

- 건강캠페인, 방문검진·예방  
접종 간 홍보활동
- 업무매뉴얼 반영 / 실무자  
포상 격려

### 예비군 부대

- 전입신고서 작성시 유가족 확인/  
채취시스템 구축
- 전사자 명부, 보훈자료 활용  
유가족 DNA 시료채취

### 병무청/군 부대

- 병역판정검사장 홍보교육
- 주기적인 지휘관심 / 서신발송
- 참여장병 휴가 조치

### 지자체/행정기관

- 제적정보시스템 활용 협조/  
주민등록시스템(서울) 활용 협조
- 대규모 행사장 사진·유품  
순회 전시 시 시료채취 관심
- 거동불편 유가족 자택방문·채취  
(국유단)

## 준비사항/혜택

### 구비 서류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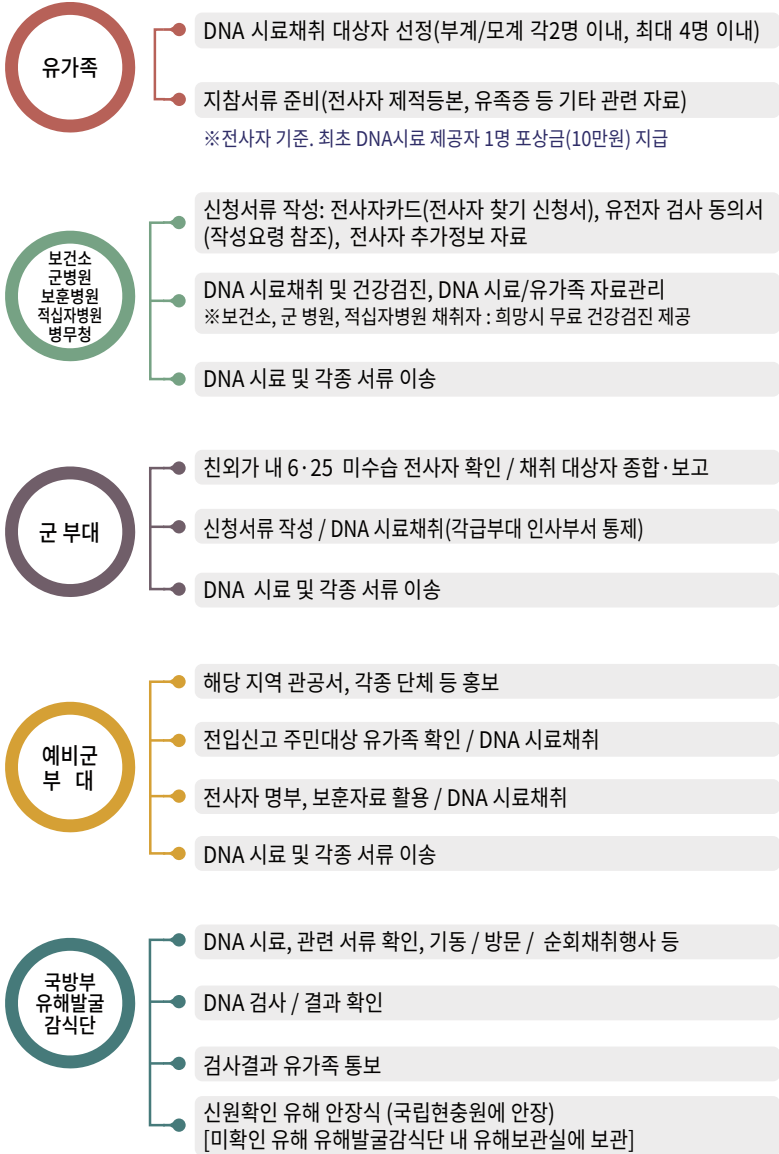
- 사전 증빙서류 준비  
- 제적등본, 유족증 사본, 전사통지서, 병적 증명서 등 (택 1)
- ※ 유가족 연락처, 주소 변경 시 국유단 전화 → **변경 요청**

### 혜 택

- DNA 제공 시 기념품 / 포상금 지급  
- 채취 시(1만원 상당), 유가족 인정 시(10만원),  
신원확인 시(1,000만원)
- 보건소, 군 병원, 적십자병원 : 무료 건강검진 제공



## 채취 기관 대상별 개괄



## 📍 채취기관별 업무 요약

▶ 보건소(지소) / 군병원 / 보훈병원 / 적십자병원 / 병무청 / 예비군부대

### 1. 유가족(DNA 시료 채취자) 지참서류 확인

#### ○ 전사자와 유가족(DNA 시료 채취자)의 가족 관계 확인

- 전사자 제적등본 또는 유족증, 전사통지서 등으로 확인
- 유족증 복사본, 전사자 제적등본, 전사통지서, 기타 관련자료(편지, 사진, 진단서 등)는 시료 및 작성서류와 함께 동봉하여 발송

#### ○ 중복 채취 인원인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으로 유선으로 확인

##### \* 미채취자로 확인 시 시료채취

(단, 전사자 1명당 유가족 최대 4명 시료채취 가능/부모계 각 2명 이내)

### 2. 전사자카드 작성

#### ○ 전사자카드는 유가족이 작성

##### \* 작성내용 확인 : 전사자와의 관계, 유가족의 성별, 주소, 포상금 희망여부 등

- \* 현역장병의 친척(지인)등이 채취한 경우 휴가 안내를 위해 하단 참고사항란에 해당 장병의 소속, 계급, 군번, 성명, 채취자와 장병과의 관계 기재

### 3. 유전자검사 동의서 작성

#### ○ 동의서는 DNA 시료채취 담당자가 유가족에게 설명, 유가족이 작성

#### ○ 유전자검사 동의서에 대한 설명은 동의서 작성요령 참조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동의서 설명 진행)

### 4. 전사자 추가정보 작성

#### ○ 전사자 추가정보는 DNA 시료채취 담당자가 질문을 통해 작성

- 전사자 특징을 모르는 유가족이 대다수이나 가급적 확인 가능한 내용은 기입

### 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작성

### 6. DNA 시료채취 및 건강검진

#### ○ 면봉을 이용하여 구강 내 상피세포 채취 후 시료채취 카드에 눌러찍기

- 시료채취 카드 앞면에 전사자와 유가족 정보기입(카드 뒷면에는 채취기관, 채취일, 채취담당자 기록 / 서명)

#### ○ 상온에서 5분 이상건조 후 시료 봉인 봉투(은박봉투)에 카드와 면봉을 넣고 밀봉

- 건강검진 희망 여부 파악, 건강검진 실시 : 보건소, 군병원, 적십자병원

(혈액검사, X-ray, 소변검사, 신체측정 등)



## 7. DNA 시료 / 유가족 자료관리

- 시료 봉인 봉투(은박봉투) 앞면에 시료 채취자와 전사자 정보기입
- 유가족 관련 서류는 담당자 외 외부공개 절대금지 / 잠금장치 유지로 개인정보 보호 (DNA 시료와 함께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으로 송부)

## 8. DNA 시료 및 각종 서류 이송

- 수시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으로 이송 (착불, CJ대한통운 1588-1255/우체국 택배 이용)
- DNA 시료 이송 시 파손예방을 위해 포장 후 이송
- 건강검진 결과지는 DNA 시료채취 유가족에게 개인우편 발송 (보건소·군 병원·적십자 병원)
- DNA 시료 및 서류 발송 후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유가족관리과로 유선통보 및 공문 발송 (DNA 시료 접수 여부 및 검진비 지급여부, 최초 DNA 시료채취자 포상금 지급 확인을 위해 공문 내용에 전사자, 유가족명, 건강검진 실시여부, 포상금 희망여부 등을 기록)
  - \* 증빙자료(유족증 사본, 제적등본 등) 미 지참자는 차후 별도 발송(발송 시 증빙자료 여백에 전사자명, 유가족명, 유가족 연락처, 채취기관 등 기록 요망)
  - \* 증빙자료 첨부가 불가한 경우, 전사자 참전 정황, 증빙자료 제출 불가사유 등을 전사자카드 하단부 참고사항란에 자세히 기록
  - \* 최초 DNA 시료채취자로서 포상금을 희망하는 경우, ① 전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제적등본, 전사통지서, 병적증명서 등/택일), ② 유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택일), ③ 통장 사본 1부, ④ 신분증 사본 1부 제출
- 보내는 곳: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250 현충원 내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유가족관리과 시료채취 관리 담당자 앞 우)06984

### 유가족(채취자) 안내사항

- 채취 후 DNA 시료의 검사기간은 10 ~ 12개월 가량 소요됨.
- 기 발굴된 유해의 DNA와 비교분석 후 이후에 발굴되는 유해의 DNA와 지속적으로 비교분석함. (1회 채취로 유해의 DNA와 계속 비교 분석 시행)
- 전사자 기준, 최초로 DNA 시료채취에 참여한 유가족 1명에게 심의 후 포상금(10만원) 지급 (19.1.1.이후 시료채취자로서 증빙자료 제출자)
- 연 1회 DNA 비교 분석 결과를 서신안내 하므로 유가족(채취자) 연락처와 주소가 변경될 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으로 변경 요청(☎1577-5625)

▶ 군 부대



1. 각급 부대 장병 대상 6·25 전사자 유가족 여부 확인 (각급 부대)

- 전사자 유가족 장병 확인, 증빙서류(유족증 사본, 제적등본 등) 준비 후 제대별 (사(여)단 단위) 인원 통보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 \* 대상자 보고 전 증빙서류(유족증, 제적등본 등 / 택일) 제출 가능여부 사전 확인 : 각급 부대
- \* **신원 확인을 향상을 위해 전사자와 촌수가 가까운 유가족 우선 신청 / 채취(전사자의 형제, 자녀 등)**

2. 보고자료 확인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 보고받은 인원 확인 후 DNA 시료채취 키트 및 신청서류를 각급 부대로 발송
  - DNA 시료채취를 하지 않은 장병과 장병의 친인척 등 복수 유가족 채취 신청 가능 (부·모계 각 2명 이내 / 총 4명 이내)
- \* 확인 내용 : 전사자 관련 기록, 유가족 DNA 기채취 여부 등



### 3. 대상자 신청 서류 작성 및 DNA 시료채취 (각급 부대)

- 전자사 찾기 신청서, 유전자 검사 동의서, 전자사 추가 정보 자료 작성
- 시료채취
  - 면봉을 이용하여 구강 내 상피세포 채취 후 시료채취 카드에 눌러찍기
  - 시료채취 카드와 스펀지 막대를 실온에서 5분 이상 건조
    - ※ 건조하지 않을 경우 곰팡이 발생으로 검사 불가 (건조시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
  - 스펀지 막대는 건조 후 포장되어 있던 흰색 종이 포장지에 다시 넣음
  - 시료채취 카드 앞면에 전자사명, 유가족명, 성별, 전자사와의 관계를 기록하고 카드 뒷면의 상담/채취담당란에 소속(채취기관명), 채취일자, 담당자 성명 기록 및 서명 후 보관용 봉투에 넣은 뒤 포장지에 담긴 스펀지 막대와 함께 은박봉투에 넣음
  - 은박봉투 앞면에 전자사명, 유가족명, 성별, 전자사와의 관계 기록

### 4. DNA 시료 / 유가족 자료관리 (각급 부대)

- 유가족 관련 서류는 담당자 외 외부공개 절대금지
- 잠금장치 유지로 개인정보 보호

### 5. DNA 시료 및 각종 서류 발송 (각급 부대)

- 시료 및 서류(전자사 카드, 증빙서류) 종합 후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으로 발송 (착불, CJ대한통운 1588-1255/우체국 택배 이용)
- 여러 건일 경우 한 건으로 포장/발송
- DNA 시료 및 서류 발송 후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유가족관리과로 통보
- ※ 증빙자료 별도 발송 시 증빙자료 여백에 전자사명, 유가족명, 유가족 전화번호, 채취기관 등 기록 요망
- 보내는 곳: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250 현충원 내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유가족관리과 시료채취 관리 담당자앞 우)06984  
☎ 군) 905-6471, 일반) 02-811-6471

#### 유가족(채취자) 안내사항

- 채취 후 DNA 시료의 검사기간은 10~12개월 가량 소요됨.
- 기 발굴된 유해의 DNA와 비교 분석 후 이후에 발굴되는 유해의 DNA와 지속적으로 비교 분석함. (1회 채취로 유해의 DNA와 계속 비교분석 시행)
- 전자사 기준, 최초로 DNA 시료채취에 참여한 유가족 1명에게 심의 후 포상금(10만원)지급 (19. 1. 1 이후 시료채취자로서 증빙자료 제출자)
- 연 1회 DNA 비교 분석 결과를 서신안내 하므로 유가족(채취자) 연락처와 주소가 변경될 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으로 변경 요청(1577-5625)
- ※ DNA 시료, 증빙자료를 모두 발송한 인원에 대해 1만원 상당 기념품 발송, 휴가 제공

## Memo





## ○ 전사자 카드(전사자 찾기신청서) 작성

### **비공개** 전사자 카드(전사자 찾기 신청서) **회수용**

※ 전사자 카드 작성요령(안내문-3페이지)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b>6·25전사자 인적사항</b>		* 6·25전쟁에 참전하지 않은 민간인 사망자 등은 대상자가 아닙니다.			
성 명	홍길동	계 급	일병	군 번	1234567
소속부대	1사단	전사일자	1952. 10. 10	전사장소	백막지구
본 적	강원도 춘천시 훈자1동 63-68				
가족관계	전사자의 부 (성명)	홍철민	전사자의 모 (성명)	김순이	전사자의 배우자 (성명) 김영숙
참고자료 (*O 표시)	제적등본 유족증, 전사통지서(확인서), 병적증명서, 사망확인서, 기타				

<b>유가족(채취자) 인적사항</b>		* 정자로 기입해 주시고 채취자의 가족관계는 반드시 1명 이상 기록하십시오.				
성 명	홍영수	성 별	남/여	주민번호	500301-1234567	
관 계	전사자의 아들	채취일자	2026. 2. 2.	채취기관	00사단 00예비군동대	
주 소 (도로명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250					
연락처	휴대폰: 010-1230-4567		자택: 02-123-4567			
채취자의 가족관계 (1명 이상 기록)	성 명	성 별	관 계	생년월일	연 락 처	거주지역
	홍건영	남/여	채취자의 아들	73. 6. 19	010-1230-7654	서울 동작구
	홍대웅	남/여	채취자의 친손자	06. 6. 6	010-3456-7890	서울 동작구

<b>DNA시료 제공자 포상금 입금</b>		* 거래불가통장, 적금통장, 증권사통장 등은 지급 불가		
희망여부 (*V 표시)	은 행 명	계 좌 번 호	예금주(본인 명의)	비 고
<input checked="" type="checkbox"/> 희망 <input type="checkbox"/> 불희망	기업	980-110467-01-018	홍영수	

※ 전사자 기준, 최초 DNA시료 제공 유가족 1명에게 분기별 심의 후 지급됩니다. (포상금 10만원 1회 지급)

□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국방부 훈령 등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b>6·25전사자 유가족 DNA시료채취를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b>												* 해당 항목에 "○" 체크해 주세요							
자 막	T V	농협			인터넷			라 디 오	신 문	현 수 막	전 광 판	국유단		군 부 대	보 건 소	병 원	보 훈 기 관	종 교 단 체	
		문 자	영 수 증	A T M	유 튜 브	S N S	홍 보 물					행 사							
○																			

<b>전사자 참전 정황, 가족사항, 유가족(채취자) 추가정보, 증빙자료 제출 불가사유 등의 내용 기록</b>	
참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단 ○여단 상병 홍대웅(25-76001200 / 26.○.○ 전역) 친조부 채취</li> <li>- 서울 현충원 위패봉안 (보훈번호 26123456)</li> <li>- 증빙자료(제적등본) 별도 제출 예정</li> </ul>

## 【작성방법】

- ▶ 전자사의 성함은 반드시 호적상의 성함으로 기록해주세요.  
병적조희 등 추가적인 확인 시 전자사 성함이 활용됩니다.
  - \* 전자사 아명(집에서 부르는 이름)이 있을 경우 '홍길동(아명 : 홍기호)'으로 기록
  - \* 전자사가 2명 이상인 경우 각각의 이름 모두 기록 : 김영일/김순일/김성일  
(전자사가 여러명이어도 유가족이 동일인이면 DNA시료는 1개만 채취)
- ▶ 본적을 아시면 꼭 작성해 주세요.
  - \* 정확한 번지까지 모르시더라도 지역명까지는 기입해 주세요.
- ▶ 전자사의 정보는 아는 범위에서만 작성하도록 하면 됩니다.
  - \* 유전자 검사는 유해와 DNA 시료의 유전자 일치 여부만 확인 합니다. 다만, 추가적인 정보는 신원확인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 됩니다.
- ▶ DNA 시료 채취자와 전자사의 관계 및 남녀구분을 명확히 작성해 주세요.
  - \* 관계와 성별에 따라 검사 방법이 달라짐.
  - \* 가족관계는 반드시 전자사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 전자사가 여러 명일 경우 각각의 관계를 기록  
예) 전자사의 여동생, 전자사의 아들 / 친조카
- ▶ 연락처는 자택 전화번호와 휴대폰으로 구분해서 작성해 주세요.
- ▶ 주소는 반드시 도로명 주소를 기입하여 주세요.
- ▶ DNA 시료채취자(유가족)의 가족관계는 DNA 시료채취자인 유가족과 연락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최소 1명 이상 작성)
  - \* 연락 가능한 채취자 형제, 자녀(딸/아들) 등의 연락처 기입
  - \* 관계란에는 채취자와의 관계를 기록 : 예) 채취자의 아들
  - \* 추가 가족이 없을 경우 미작성(하단부 참고사항란에 미작성 사유 기록 요망)
- ▶ DNA시료 제공자 포상금 입금란에 기록해 주세요(불희망인 경우 불희망  표시)
- ▶ DNA 시료채취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해당 내용에 "ㅇ"표시 해주세요
- ▶ 하단부 참고사항란에는 서식에 작성하지 못한 전자사 참전정황, 가족사항, 유가족(채취자) 추가 정보, 증빙자료 제출 불가 사유 등의 내용을 기록해 주세요.
  - \* 현역장병 관련 민원의 경우 소속, 계급, 군번, 성명, 전역예정일, 채취자와의 관계를 반드시 기재 (소속 부대에 휴가안내를 위해 필요한 사항임)
- ▶ 신청서 작성 후 주소 또는 전화번호 변경 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유가족관리과로 연락하도록 설명해 주세요. (유전자 검사 완료 후 검사결과를 서신으로 통보하기 위함.)
  -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유가족관리과 ☎ 1577-5625(오! 6·25)



# 유전자검사 동의서 작성



## 유전자검사 동의서

**회수용**

※ 읽어보신 후 “\*” 표시한 부분을 꼭 작성해 주십시오.

* 검사 대상자	성명	홍영수	생년월일	50. 3. 1
법정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 상담자	소속(기관명)	○사단 ○여비군동대	성명	김대한
			군번(순번) <small>(문부대인 경우)</small>	700625
* 동의서 작성일자	2026년 2월 2일			

1. 유전자검사의 목적: 6·25전쟁 전사자 발굴유해·유가족 신원확인  
 2. 검사대상물의 보존기간  
 :  전자자유해 신원확인 시까지 [ ] 동의권자의 추후 폐기요청 시까지  
 3. 본래 목적 외로 검사대상물을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함  
 4. 검사대상물을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때에 개인정보 포함 여부  
 :  개인정보 제외 [ ] 개인정보 포함

※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자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본인이 충분히 이해하였다고 판단할 때에 [ ]에  표를 하십시오.

가. 유전자 검사의 이익과 위험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 [  ]  
 나. 전자자유해의 신원 확인 또는 동의권자의 폐기 요청에 따른 폐기대상 검사대상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방법·절차에 따라 폐기됩니다. .... [  ]  
 다. 유전자 검사기관(위탁용역 포함)이 폐업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검사대상물을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검사대상물을 이관합니다. .... [  ]  
 라. 동의권자가 위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했다라도 검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  ]  
 마. 유전자 검사기관(위탁용역 포함)은 동의권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  ]  
 바. 본인의 유전자 검사결과에 대하여 확인·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  
 사. 유전자 검사동의서, 검체, 검사 관련 자료는 「6·25 전자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보관·관리됩니다. .... [  ]

위의 사항에 대한 동의는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임을 확인합니다.

\* **확 인 :** 검사대상자 홍영수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_\_\_\_\_ (서명 또는 인)  
 \* **상 담 자** 김대한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 법정대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작성방법】

- ▶ DNA 시료채취 후 바로 유전자검사로 이어지므로 개인정보와 관련된 유전자 검사와 관련하여 DNA 시료채취 전 반드시 유전자검사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 유전자검사 동의서는 DNA 시료채취 담당자가 유가족에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유전자검사 동의서 항목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내용으로 임의의 정정이 불가합니다. 아래의 유전자검사 동의서 작성요령을 확인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전사자 유해발굴 및 신원확인을 위한 유전자검사는 법에 의한 목적 외 사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강조 요망
- ▶ 유전자 검사 동의서 작성요령(각 항목별 설명)

1. 유전자검사의 목적은 “6·25전쟁 전사자 발굴유해·유가족 신원확인”의 일환이며 국가 무한책임 완수를 위함입니다.
- 2~4. 검사대상물의 처리는 검사 후 5년간 보존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유단은 검사대상물을 유가족과 발굴유해와의 유전자 일치여부만 확인하며 이외의 목적으로 검사대상물을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 추가 설명내용
  - 가. “유전자검사의 이익과 위험”이란 유전적 질병에 대해 알 수 있다는 부분이나 국유단에서 실시하는 유전자 검사는 전사자의 신원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발굴되는 유해와 유가족의 유전자 일치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므로 유전자 검사의 위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나. 검사대상물에 대해서는 5년간 보존을 법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존기간이 지난 채취샘플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폐기처리 됩니다.
  - 다. 유전자검사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유전자 분석과에서 실시하므로 검사기관의 폐업위험이 없습니다.
  - 라. 동의권자(유전자 채취 유가족)의 동의여부에 의해 연구를 실시하고 만약 중도에 검사중단을 희망하시면 검사중단이 가능합니다.
  - 마. 검사를 총괄하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유가족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중 잠금장치는 물론 담당자 외 개인정보 확인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바. 검사 후 검사대상물은 법적 보관일 이후에는 폐기되나 유전자 검사의 결과는 영구적으로 보존되며, 검사결과에 대해 열람(유전자 일치, 불일치 여부)을 청구 할 수 있으나 유전자 지도는 법적으로 열람이 불가합니다.
  - 사. 이 모든 서류작성 및 유전자 검사는 법률/시행령에 의하여 보관·관리됩니다.



## 【작성방법】

- ▶ 가족관계를 기록 후 DNA 시료채취 담당자가 직접 유가족을 대상으로 추가 정보자료 양식에 의거 질문을 통해 작성하시면 됩니다.
- ▶ 골절 / 치아보철 / 깨진 치아 등은 유해 발굴 간 특징적인 요소이므로 상세히 작성합니다.
- ▶ 전쟁 당시 전사자의 특징적인 휴대물품(도장, 만년필, 반지, 시계, 사진 등)을 기억나는 대로 상세히 작성합니다.
- ▶ 전사자 추가정보 자료 용지에 해당사항을 기록합니다.
  - \* 전사자의 신체특징 또는 치아특징을 모르는 유가족이 대부분이나 가급적 확인 가능한 모든 내용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에 성명을 기록 후 서명을 합니다.



## DNA 시료채취 요령



### 1 시료채취키트 내용물 확인

- ① 6·25전사자 유가족 DNA시료채취 안내문
- ② 전자카드(전사자 찾기 신청서)등 회수용 서류
- ③ DNA 시료채취 키트 세트(시료채취 카드, 시료채취 카드 보관용 창봉투, 스펀지 막대, 은박봉투)
- ④ 시료회수용 봉투(반송용 우편봉투)



### 2 전자카드(전사자 찾기 신청서)등 회수용 서류 작성(3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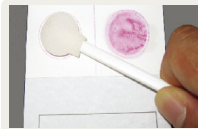
안내문 3페이지의 전자카드작성 요령을 참고하시어 전자카드 등 회수용 서류 3매 작성



### 3 구강시료 채취 - 1

입안을 물로 가볍게 헹군 후 스펀지 막대로 양쪽 볼 안쪽, 잇몸, 혀바닥을 문질러 구강내 타액과 상피세포가 골고루 묻게 채취

※ 정확한 검사를 위해 시료 채취 전 양치질을 하시면 안되며 단순히 타액만 묻혀 채취한 경우 검사가 불가하여 재 채취하는 사례 일부 발생



### 4 구강시료 채취 - 2

시료채취 카드의 핑크색 원 안에 스펀지 막대로 여러 차례 눌러 찍은 뒤 핑크색 부분이 흰색으로 변하는 것 확인

※ 충분치 않다고 판단되면 동일한 스펀지로 반복 채취 가능



### 5 시료봉인

- ① 시료채취 카드와 스펀지 막대를 실온에서 5분 이상 건조  
※ 건조하지 않을 경우 곰팡이 발생으로 검사 불가 (건조시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
- ② 스펀지 막대는 건조 후 포장되어 있던 흰색 종이 포장지에 다시 넣음
- ③ 시료채취 카드 앞면에 전사자명, 유가족명, 성별, 전사자와의 관계를 기록하고 카드 뒷면의 상담/채취담당관에 소속(채취기관명), 채취 일자, 담당자 성명 및 서명 후 보관용 봉투에 넣음
- ④ 은박봉투 앞면에 전사자명, 유가족명, 성별, 전사자와의 관계 기록
- ⑤ 채취카드가 담긴 보관용 봉투와 종이 포장지에 담긴 스펀지 막대를 밀봉봉투(은박봉투)안에 동봉



### 6 회수용 봉투에 넣기

시료봉인 밀봉봉투(은박봉투), 전자카드(전사자 찾기 신청서)등 회수용 서류와 유가족 증빙서류(전사자 제적등본 또는 유가족증 사본 등 / 택1)를 회수용 봉투(반송용 우편봉투)에 넣어 발송



### 7 발송

수신자 부담 착불 택배로 발송  
(CJ대한통운 1588 - 1255 / 우체국 택배)

※ 택배 비용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서 부담하므로 발송 비용은 무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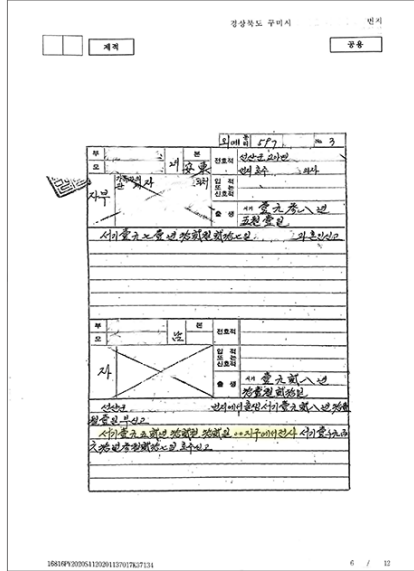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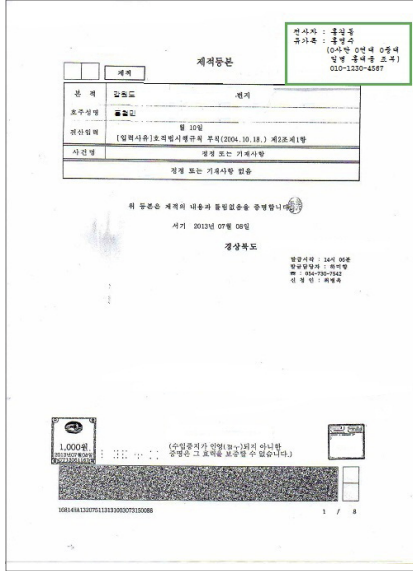
## 📍 DNA 시료 발송관리(각종 서류 발송)

- ▶ DNA 시료는 **실온**에서 보관합니다. (냉동보관 필요 없음)
  
- ▶ 유가족의 작성서류 및 지참서류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으로 송부하기 전까지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곳에 보관하며 담당자 외 외부공개를 절대 금합니다.
  
- ▶ DNA 시료 및 유가족 작성서류, 증빙서류를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으로 수시로 발송합니다.
  
- ▶ DNA 시료의 특징을 고려하여 포장 후 안전하게 발송되어야 합니다.
  - \* 소량일 경우 회수용 봉투에 찢어지지 않도록 잘 포장하여 발송
  - \* 다량일 경우 박스나 큰 봉투에 시료 및 서류를 포장하여 한 건으로 발송
  - \* DNA 시료는 반드시 유가족 관련 서류와 함께 동봉
  
- ▶ 택배이송은 국방부와 협의를 거친 지정업체(CJ대한통운 1588-1255)와 우체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 배송비용은 국방부 부담
  - \* 우체국 정기/소포 또는 CJ대한통운 택배 회사를 이용하여 발송 부탁드립니다. (타 택배회사 이용 시 비용 결제에 애로사항 발생)
  
- ▶ 보내는 주소는 아래와 같으며 반드시 DNA 시료 및 자료발송 후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유가족관리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보내는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250 현충원 내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유가족관리과 시료채취 관리 담당자 앞 우)069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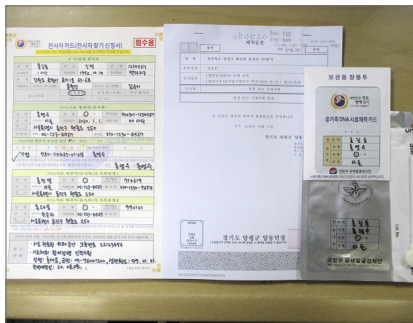
▶ 증빙서류 첨부시 기록/확인사항

- \* 증빙서류 표지 상단에 전자자명, 유가족 소속계급·성명, 관계, 전화번호 등 기록
- \* 전자자로 확인된 이름과 해당 기록내용 표시(형광펜, 싸인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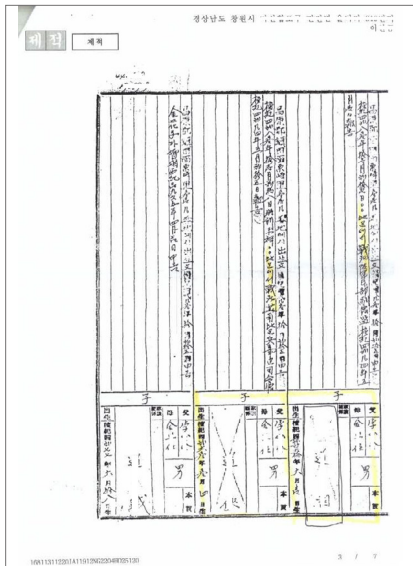


▶ 키트/증빙서류 발송

- \* 은박봉투 네모박스 안에 전자자명, 유가족(성명, 성별, 관계) 기록  
→ 보관용 창봉투에 담은 채취카드와 면봉(종이포장 안에 넣어서)을 넣고 봉인
- \* 기록된 내용을 재확인하고 위로부터 은박봉투, 전자자카드, 증빙자료 순으로 철한 뒤 회수용 봉투에 넣음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유가족관리과로 발송 (착불/우체국, CJ대한통운)



▶ 6·25 전사자 유가족 증빙자료(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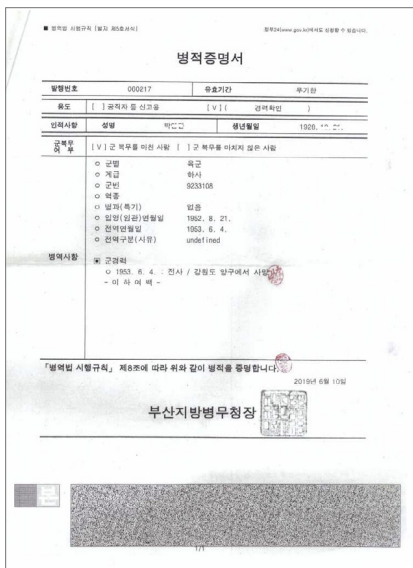
제적등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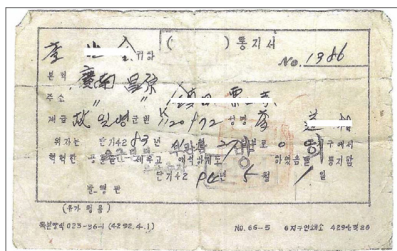
유족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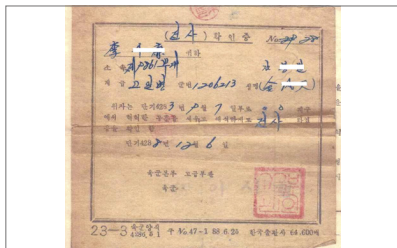
유족 증명서



병적증명서



전사통지서



전사확인증



---

# 기관별 중점 확인사항

---

- 
- › 보건소(지소) / 군병원 / 보훈병원 / 적십자병원
  - › 병무청(병역판정 검사장)
  - › 군 부대
  - › 예비군부대(지역대, 읍·면·동대, 기동대)
-



## 📍 보건소(지소) / 군 병원 / 보훈병원 / 적십자병원

### 1. 세부 확인사항

- ▶ **유가족이 지참한 서류를 확인합니다.**(전사자와의 친족 관계 확인용)
  - \* 지참서류 : 전사자 제적등본 또는 유족증, 전사통지서, 병적증명서 등 (택일)
  - \* 전사자와의 가족관계 증명 및 추가적인 검사 대상자 판단을 위해 『전사자 제적등본』이 필요함.
  
- ▶ 전사자의 다른 유가족이 채취한 적이 있는지 유해발굴감식단에 확인합니다.  
(☎ 1577-5625)
  
- ▶ 지참서류는 **DNA 시료채취 후 작성서류와 함께 보관합니다.**  
(추가 자료를 이용한 신원확인 가능)  
모든 지참서류(유족증 사본, 전사자 제적등본, 전사통지서, 병적증명서 및 기타 전사자  
관련자료 : 편지, 사진, 진단서 등)는 작성서류와 함께 보관됩니다.
  
-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유가족 관련 모든 서류는 담당자 외에는 **외부 공개를 절대  
금하며 DNA 시료 이송 시 동봉하여 수시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으로 송부합니다.**
  - \* 증빙자료 별도 발송 시 증빙자료 여백에 전사자명, 유가족명, 유가족 전화번호, 채취기관 등  
기록 요망
  
- ▶ DNA 시료채취 유가족에 대해서는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가 제공됨을 알려주시고 본인  
희망 시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DNA 시료채취 유가족 건강검진” 참고 (P. 37)
  - \* DNA 시료채취 대상자, 서류 작성 방법, DNA 시료채취 방법, 시료 및 서류 이송방법은 “DNA  
시료채취 업무 절차”참고
  
- ▶ 전사자 기준, 최초로 DNA 시료채취에 참여한 유가족 1명에게 심의 후 포상금  
(10만원)이 1회 지급되므로 포상금 희망여부 등을 확인바랍니다. (최초 DNA  
시료채취자가 아닌 경우 포상금 미지급)

## 2. 유가족 건강검진

유가족들의 적극적인 DNA 시료채취 참여홍보와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하여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유가족 방문 시 유가족 건강검진에 대해 알려주시고 **희망 여부를 파악**하여 본인 희망 시 유가족 DNA 시료채취와 병행하여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해 주세요.

### ▶ 보건소 건강검진 항목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서는 DNA 시료채취 유가족 건강검진을 위한 표준 건강검진 항목을 제시하고 있으나 각 보건소별로 검사 가능 항목이 상이하므로 각 보건소에서는 표준 건강검진 항목(37항목) 중 보건소에서 검사 가능한 항목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혈액검사 : 건강검진에 필요한 혈액 채혈
- \* 기타검사 : X-ray, 소변검사, 신체측정 등

### ▶ 군 병원 건강검진 항목

전국 군 병원은 간부 정례신체검사의 항목과 동일 항목으로 DNA 시료채취 유가족들에게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건강검진 비용

국방부에서 제시하는 표준건강검진 항목 모두를 검사하는데 1인 검진비용(5만원)이 초과된다면 다음 제시 항목 중 일부를 제외하여 검진을 시행해 주시면 됩니다.

- \* 제외 가능항목  
고지혈증검사(LDL, HDL, TG), 간기능검사(LDH, ALP), 신장기능검사(Uric acid),  
간염검사(B형 항원-항체)

예) 37개 표준검사 항목 검사 비용이 55,000원이면 검사 항목별 비용을 고려하여 50,000원 이하의 검사 비용 범위 내에서 검사 시행 (일부 검사 항목 제외)



## 표준 검사항목

구 분	검 사 항 목	세 부 내 용	일 반 명 칭	비 고
소변검사	소변검사(10종)	비중	신장기능 검사 (소변검사)	
		pH		
		WBC(urine)		
		nitrite(아질산염)		
		protein(urine)		
		glucose(urine)		
		ketone		
		Urobilinogen		
		bilirubin		
		occult blood		
		혈액검사		혈액화학검사(5종)
RBC				
Hemoglobin				
Hct				
PLT				
생화학검사(16종)	Glucose		당뇨(혈당) 검사	
	T.Chol		고지혈증 검사	
	TG			
	HDL			
	LDL			
	T.Protein			간기능 검사
	Albumin			
	AST			
	ALT			
	ALP			
	γ-GTP			
	T.Bil			
	LDH			
	BUN		신장기능 검사	
	Cr			
Uric acid				
방사선 촬영	방사선 촬영	Chest PA	흉부질환 검사	
B형 간염 검사(2종)		B형 간염 항원	B형 간염 검사	
		B형 간염 항체		
신체측정(3종)		키, 몸무게		
		허리둘레/비만도(BMI)		
		혈압, 시력, 청력		

### 3. 건강검진 비용 정산

▶ DNA 시료채취 유가족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과 별도의 사업으로 검진비용을 국방부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종으로 청구되지 않도록 행정절차상 주의해 주세요.

▶ 지자체 조례 상 무료검진 대상자가 건강검진을 희망한다면 지자체 조례를 우선 적용하여 무료검진을 시행해 주세요.

▶ DNA 시료채취 유가족 건강검진 비용 정산은 분기 1회 실시합니다. 분기별 유가족 DNA 시료 이송 시 6·25 전사자 유가족 건강검진 결과 내용, 개인별 청구 자료, 비용 청구서를 동봉하여 발송하면 DNA 시료 접수 여부 확인 후 각 보건소 및 군병원 세입 통장으로 건강검진 비용을 입금합니다.

\* 분기 결산 (1/2/3/4분기: 4/7/10/12월)

▶ 무료검진 대상자가 지자체 조례(연간 1회 무료)에 의한 무료 건강검진 시행 후 유가족 건강검진 희망 시

예) 68세의 홍길동씨가 2월 5일 보건소에서 무료 건강검진, 8월 11일 유가족 DNA 시료채취, 건강검진을 희망

예시와 같은 경우 무료검진 대상자에 속하지만 보건소에서 이미 무료 건강검진 혜택을 받으셨으므로 DNA 시료채취 유가족 건강검진을 시행해 주시고 비용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 6·25 전사자 시료채취 유가족 건강검진 비용 청구서

청구기관	검진기관명	요양기관번호	소 재 지		
	○○보건소	34700013	경기 안양시 ○○○○○○○○ (TEL : 031-390-3355)		
청 구 처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청 구 내 역					
건 강 검 진 종 목			검진단가(A)	실시인원(B)	청구금액(A×B)
요검사	10종	10종	3,000	4	12,000
혈액검사	혈액(I)	혈당	1,410	5	7,050
		총콜레스테롤	1,650	5	8,250
		HDL	5,270	5	26,350
		중성지방	3,070	5	15,350
		AST	1,690	5	8,450
		ALT	1,690	5	8,450
		γ-GTP	2,830	5	14,150
		BUN(혈중 요소질소)	1,680	5	8,400
		크레아티닌(Cr)	1,380	5	6,900
	요산(Uric acid)	1,390	5	6,950	
	혈액(II)	WBC	670	5	3,350
		RBC	670	5	3,350
		혈색소	1,070	5	5,350
		헤마토크리트	670	5	3,350
혈소판		810	5	4,050	
B형간염검사	항원(정밀)	항원(정밀)	8,930	4	35,720
	항체(정밀)	항체(정밀)	9,960	4	39,840
흉부방사선촬영	Chest PA	Chest PA	5,990	4	23,960
기 타	암지표검사	간암(AFP)	11,040	3	33,120
		대장암(CEA)	14,690	3	44,070
		전립선암(PSA)	15,350	3	46,050
	당화혈색소	당화혈색소	6,500	5	32,500
계				5	397,010

우리 기관에서 2025.10.1~2025.12.10 까지 실시한 6·25 전사자 시료채취 유가족 건강검진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청 구 일 : 2025년 12월 10일

대표자(청구인) : ○○ 보건소장 (인)

## 6·25 전자사 시료채취 유가족 건강검진 개인별 청구자료

보건소명 : ○○ 보건소

순번	검진구분	검진일자	이름	주민번호	성별	연령	검진금액
1	6·25전자사시료채취유가족건강검진	2025/12/10	김기동	441212-1*****	남	82	95,420
2	6·25전자사시료채취유가족건강검진	2025/12/10	박기영	741212-1*****	남	52	79,520
3	6·25전자사시료채취유가족건강검진	2025/12/10	박보영	791212-2*****	여	47	60,330
4	6·25전자사시료채취유가족건강검진	2025/12/15	홍길순	580404-2*****	여	68	60,330



## 6·25 전사자 시료채취 유가족 건강검진 결과 내용

성명	김기동	주민번호	441212-*****	성별	남	나이	82	검진일	2025/12/10
주소						검진기관	○○보건소		

구 분	구 분	검 사 항 목	검사여부		
요검사	요단백	요단백	○		
	요당	요당	○		
	PH	PH	○		
	요잠혈	요잠혈	○		
	비중(SG)	비중(SG)	○		
	백혈구(뇨)	백혈구(뇨)	○		
	아질산염(뇨)	아질산염(뇨)	○		
	케톤(뇨)	케톤(뇨)	○		
	요중빌리루빈(Urobilinogen)	요중빌리루빈(Urobilinogen)	○		
직접빌리루빈(Bilirubin)	직접빌리루빈(Bilirubin)	○			
혈액검사	혈액(I)	혈당	○		
		총콜레스테롤	○		
		HDL	○		
		중성지방	○		
		AST	○		
		ALT	○		
		γ-GTP	○		
		BUN(혈중 요소질소)	○		
		크레아티닌(Cr)	○		
		요산(Uric acid)	○		
	혈액(II)	WBC	○		
		RBC	○		
		혈색소	○		
		헤마토크리트	○		
		혈소판	○		
B형간염검사	항원(정밀)	항원(정밀)	○		
	항체(정밀)	항체(정밀)	○		
흉부방사선촬영	Chest PA	Chest PA	○		
기 타	암지표검사	간암(AFP)	○		
		대장암(CEA)	○		
		전립선암(PSA)	○		
	당화혈색소	당화혈색소	○		
판정의	윤희계	판정의면허번호	234566	판정일자	2025/12/12

## 4. 건강검진 결과 통보

- ▶ 건강검진 결과의 통보는 검진을 시행한 기관에서 **6·25 전자자 유가족 건강검진 결과지 양식** 또는 각 보건소 및 병원에서 사용하는 **결과 통보서 양식**을 이용하여 **유가족에게 우편으로 통보**해 주세요.

### 6·25 전자자 유가족 건강검진 결과지

성 명	박남정	주민번호	801225-2-****	전화번호	010-000-0000	등록번호	11081578
주 소	서울시 구로구					검진일	2025/12/10
검사코드	검 사 명	결 과	판 정	단 위	참 고 치		
신체계측	혈압(수축)	80		mmHg			
	혈압(이완)	120		mmHg			
	체중	55		kg			
	신장	160		cm			
	BMI	21.4		kg/m <sup>2</sup>			
면역 혈청검사	B형간염표면항원, 일반	음성	정상		음성		
	C형간염항체, 일반	음성	정상		음성		
	B형간염표면항체, 일반	양성	정상		음성, 양성		
체액검사	당	+	이상값	mg/dl	-		
	빌리루빈	±	이상값	mg/dl	-		
	단백	-	정상	mg/dl	-		
	아질산염	-	정상	mg/dl	-		
	케톤체	-	정상	mg/dl	-		
	유로빌리노겐	+	이상값	mg/dl	±		
	백혈구(Le)	+	이상값		-		
	요잠혈	-	정상		-		
	비중	11	이상 - 상한		1.003~1.030		
	PH	1	이상 - 하한		4.5~8.0		
요침사현미경검사	RBC 0-2	이상값					
혈액검사	헤마토크리트	5	이상 - 하한	%	34.0~45.0		
	백혈구수	2	이상 - 하한	10 <sup>9</sup> /mm <sup>3</sup>	4.0~10.0		
	Hemoglobin	4	이상 - 하한	g/dl	11.5~15.3		
	혈소판수	6	이상 - 하한		140~400		
	적혈구수	3	이상 - 하한		3.8~5.3		
혈액 화학검사	AST(SGOT)	7	정상	U/L	0~37		
	ALT(SGPT)	8	정상	U/L	0~40		
	알칼리포스타파제	14	이상 - 하한	U/L	50~136		
	γ-GTP	9	정상	U/L	5~85		
	LDH	15	이상 - 하한	U/L	100~190		
	알부민	11	이상 - 상한	g/dl	3.8~5.3		
	총단백정량	335	이상 - 상한	g/dl	6.4~8.2		
	빌리루빈정량(직접빌리루빈)	13	이상 - 상한	mg/dl	0.00~0.30		
빌리루빈정량, 총빌리루빈	12	이상 - 상한	mg/dl	0.00~1.00			
크레아티닌	25	이상 - 상한	mg/dl	0.6~1.3			
총콜레스테롤정량	15	정상	mg/dl	0~240			



검사코드	검 사 명	결 과	판 정	단 위	참 고 치
혈액 화학검사	요산	34	이상 - 상한	mg/dl	2.6~7.2
	지질, 트리글리세라이드	16	이상 - 하한	mg/dl	30~200
	HDL콜레스테롤	23	이상 - 하한	mg/dl	32~96
	당검사(정량)~식전(FBS)	45	이상 - 하한	mg/dl	70~126
	요소질소(NPN포함)	23	이상 - 상한	mg/dl	7~18
효소면역 측정검사	알파피토프로테인, 정밀	45	이상 - 상한	IU/ml	0~10
	CA-125	56	이상 - 상한	U/ml	0~35
	전립선특이항원PSA	67	이상 - 상한	ng/ml	0.00~4.00
장비검사	흉부(Chest PA)	정상	정상		정상
	골밀도검사(유료)	정상	정상		
판 정	질환의심 질환의심 : 고혈압 의심/빈혈증 의심				
소 견	정상B				
판정의	홍길동	판정의면허번호	12345	판정일자	2025/12/12

[보건소(지소), 군 병원 등 공문발송 예문]

## ○ ○ 보건소

수신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유가족관리과장)

(경유)

제목 6·25 전사자 유가족 DNA 시료 송부

---

### 1. 관련근거

가. 법률 제 20309 호('24.2.13.) 6·25 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나. 대통령령 제 35562 호(' 25.6.2. ) 6·25 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위 관련근거에 따라 아래와 같이 6·25 전사자 유가족 DNA 시료를 송부합니다.

가.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자

구분	전사자	유가족	관계	채취일	건강검진 실시여부	포상금 희망여부	비고
내용	홍길동	홍영수	아들	'25.12.26	○	○	

(이상 1명)

### ※ 건강검진 실시 시

나. 건강검진 비용 청구

- 1) 청구금액 : ○○○원
- 2) 입금계좌 : ○○은행 123-123-123456
- 3) 사업자등록번호 : 123456

붙임: 1. 전사자 찾기 신청서 (별도 발송)

2. 유가족 DNA 시료 (별도 발송)

3. 증빙서류 (별도 발송)

4. 건강검진비용 청구서

5. 개인별 청구자료

6. 건강검진 결과내용, 끝.



## 📍 병무청 [병역판정 검사장]

- ▶ 병역판정 검사 대상자에 대해 검사일정 통보시 유가족 DNA 시료채취 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합니다.(E-mail 또는 서신 등)
  - \* 입영장정에 대해서는 입영통지서 발송 시 6·25전사자 유가족 찾기 설문서와 동봉 발송 (P 47. 설문서 참조)
- ▶ 병역판정검사 당일, 검사자를 대상으로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 및 유가족 DNA 시료채취 절차 등에 대한 홍보교육과 유전자 시료채취 애니메이션을 방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 DNA 시료채취 참여자에 대해서는 입영 후 위로휴가 제공
- ▶ 유가족 DNA 시료채취 대상자가 지참한 서류를 확인합니다.(전사자와의 친족 관계 확인용)
  - \* 지참서류 : 전사자 제적등본 또는 유족증 사본, 전사통지서, 병적증명서 등(택일)
- ▶ 전사자의 다른 유가족이 채취한 적이 있는지 유해발굴감식단에 확인합니다. (☎ 1577-5625)
- ▶ 지참서류는 DNA 시료채취 후 작성서류와 함께 보관합니다.
  - \* 모든 지참서류(유족증 사본, 전사자 제적등본, 전사통지서, 병적증명서 및 기타 전사자 관련 자료 : 편지, 사진, 진단서 등)는 작성서류와 함께 보관됩니다.
- ▶ 전사자 기준, 최초로 DNA 시료채취에 참여한 유가족 1명에 대해 심의 후 포상금 (10만원)이 1회 지급되므로 포상금 희망여부 등을 확인바랍니다.(최초 DNA 시료채취자가 아닌 경우, 포상금 미지급)
-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유가족 관련 모든 서류는 담당자 외에는 외부 공개를 절대 금하며 DNA 시료 이송 시 동봉하여 수시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으로 송부합니다.
  - \* 증빙자료 별도 발송 시 증빙자료 여백에 전사자명, 유가족명, 유가족 전화번호, 채취기관 등 기록 요망
  - \* DNA 시료채취 대상자, 서류 작성 방법, DNA 시료채취 방법, 시료 및 서류 이송 방법은 P.11 “DNA 시료채취 업무 절차” 참고

# 1. 입영 장정 설문지

설문결과 유가족으로 확인되어 DNA 시료채취시 휴가증과 기념품을 드립니다.

성명: \_\_\_\_\_ 주소: \_\_\_\_\_

**본 설문은 6·25 전사자의 유가족을 찾기 위한 내용입니다.**

국방부에서는 '00년부터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을 시작하여 '25년도 까지 약 11,000여 구의 전사자를 발굴하였으나 신원이 확인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신 분은 268분에 불과합니다. 이는 전사자유해 발굴 뿐만 아니라 그 분들의 유가족을 찾는 일이 더욱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발굴되신 분들 중에는 여러분의 친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입영 전 아래의 가계도를 참고하여 6·25 전쟁시 전사하신 분 중 유해를 찾지 못하신 분이 계시는지 부모님이나 친척분들께 확인 후 설문에 참여해 주시고, 작성한 설문지는 입영 시 반드시 휴대하여 배치받은 훈련소나 신고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가 없을 경우라도 반드시 입영부대에 제출 바랍니다.

**1. 친인척(8촌 이내)분 중 6·25 전쟁에 참전 하셨다가 전사하신 후 아직 유해를 찾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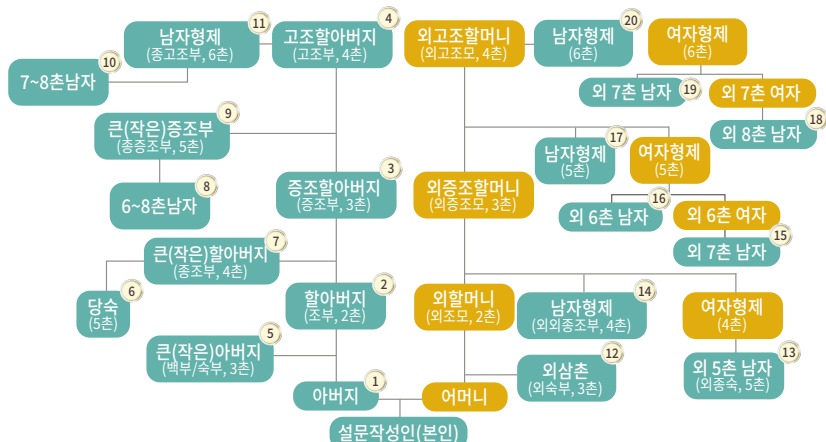
가. 예( ) 나. 아니오( )

**2. 계신다면 전사자 분의 존함과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가. 전사자 존함: 나. 나와의 관계: 번

※ 아래 가계도 참고 후 해당되는 관계를 숫자로 표시(예) 증조할아버지인 경우 : 3번)

※ 참고 : 가계도 (설문작성자가 기준)



문의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MAKRI)

☎ 1577-5625 (오6·25)



## 군 부대

현역장병 중 다수가 전사자 유가족(또는 친족관계)으로 추정되지만, 실제 시료채취에 참여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6·25 전사자 유가족 DNA 시료채취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역장병 대상 유가족 파악 및 채취에 적극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 각급 부대 확인사항

- ▶ 단위 부대별 장병 대상 친가, 외가에 6·25 미수습 전사자 여부 확인을 하기 위하여 유해발굴사업 및 유가족 DNA 시료채취에 관한 홍보 교육을 실시하고, 친족 (친가, 외가)중 6·25 미수습 전사자가 있는 인원을 확인 후 제대별 (사(여)단 단위) 종합하여 통보해 주십시오.

\* 통보시기 : 수시 (군 905-6463 / 일반 02-811-6463)

#### ▶ 보고자료 확인 / 대상자 통보

유해발굴감식단에서는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 채취 가능 여부를 확인 후 DNA 시료채취 키트를 각 부대로 발송해 드립니다.

#### ▶ 대상자 신청 서류 작성 및 DNA 시료채취

각 부대에서는 대상 장병이 전사자 찾기 신청서 등 신청서류를 작성한 후 시료를 채취하도록 통제 하시기 바랍니다.

- ▶ 전사자 기준, 최초로 DNA 시료채취에 참여한 유가족 1명에 대해 심의 후 포상금 (10만원)이 1회 지급되므로 포상금 희망여부 등을 확인바랍니다.(최초 DNA 시료 채취자가 아닌 경우, 포상금 미지급)

#### ▶ DNA 시료 및 신청서류 / 증빙서류 종합 및 발송

사(여)단급 이상 부대에서는 각 부대별로 수거된 DNA 시료 및 신청서류/증빙 서류(전사자 제적등본, 유족증 등)를 종합하여 유해발굴감식단으로 통합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 DNA 시료채취 대상자, 서류 작성 방법, DNA 시료채취 방법, 시료 및 서류 이송방법은 P.11 “DNA 시료채취 업무 절차” 참고

## 2. 군 부대 유가족 DNA 시료채취 간 강조사항

### 공통사항

- **신병 입퇴소식 행사 간 홍보교육 자료 발송**
  - ※ 다양한 홍보영상, 홍보자료 필요 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홈페이지 홍보마당 참고
- **신병교육 간(2~3주차) 홍보교육 자료 활용, 유가족 대상자 확인**
  - ※ 수료식 행사 간 참석한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 및 증빙자료 접수
- **전사자 유가족 검증 및 시료채취 절차에 의거 채취**
  - 시료채취 희망자 중 관련 서류 미입증 또는 전사자 병적조회 불가시 시료채취 제한
    - ※ 노무자, 학도병 등 비군인 참전자도 채취 가능
  - **키트 신청자 보고/키트 발송**
    - 신청자 보고: 소속부대 → 사(여)단 인사처 → 유해발굴감식단 유가족관리과
    - ※ 사(여)단급 부대 담당자는 전사자 이름, 본적, 군번 등을 확인 후 유해발굴감식단 유가족관리과에 **제** 채취자가 있는지 전화 확인(☎ 1577-5625)
    - 키트발송: 유해발굴감식단 → 사(여)단 인사처 → 소속부대
    - 키트회수/제출: 소속부대 → 사(여)단 인사처 → 유해발굴감식단 유가족관리과
    - ※ 사(여)단: 국방부 제출 전 전사자카드 첫 페이지, 증빙서류 복사/보관(1년)
- **DNA시료 채취를 하지 않은 장병과 장병의 친인척(전사자의 8촌 이내) 등 복수유가족 채취 신청 가능(부모계 각 2명/총 4명 이내)**
  - ※ 부계 3명 채취 시 1명 검사 제외(2명 이내 채취 요망)
  - ※ 전사자 기준, 최소로 DNA시료 채취에 참여한 유가족 1명에게 심의 후 포상금(10만원) 지급 ('19. 1.1 이후 시료채취자로서 증빙자료 제출자)
- **신병교육대/훈련소 등에서 자체(순회) 채취한 인원은 수료식 후 증빙서류 제출 제한 시 지휘관확인서를 첨부하여 발송하되 전사자카드 하단부 참고사항란에 훈련병 군번, 보충부대(배치부대) 등을 명시하여 보고**
  - ※ 휴가 조치 안내 및 장기 검사보류자 방지차원
- **제출 시에는 반드시 사(여)단 인사처 및 훈련소 인사처 등을 경유해서 보고**

### 신청자 보고 시

- **유가족 시료채취가 가능한 전사자의 기준에 해당되는지 확인**
  - ※ 유가족 DNA시료채취 업무 안내서 등 참조
- **전사자의 다른 유가족 **제** 채취 여부 전화 확인(유해발굴감식단 유가족관리과)**
  - ※ 형제 또는 부모의 경우 보건소, 군 부대 등에서 이미 채취했음에도 재신청 사례 다수 확인
- **대상자 보고 전에 증빙자료[제작등본, 유족증 사본, 유공자 확인원, 전사통지서(확인서), 사진 등/택일] 제출 가능여부 확인(증빙자료는 채취 후 시료와 함께 원본을 동봉하여 발송)**
  - 증빙자료 제출 불가 현역장병(유가족) 업무 처리
    - :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에 의한 부모통화 확인(참전정황, 증빙자료 제출 불가 사유 등) →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확인서에 관련내용 작성 → 채취키트와 동봉하여 제출(채취키트, 전사자카드, 지휘관 확인서 순으로 철하여 제출)
  - 단, 참전 정황, 증빙자료 제출 불가 사유를 자세히 기록한 확인서만 증빙자료로 인정 (비대상자가 허위 보고되는 일이 없도록 확인 요망)
  - 군 부대에서 자체 지역주민 등 일반인 채취시 증빙자료 제출이 불가한 경우
    - : 전사자카드에 전사자 본적, 부모 등 확인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참전 정황, 증빙자료 제출 불가 사유 등을 기록한 지휘관 확인서 또는 유해발굴담당장교 확인서와 채취키트를 동봉하여 제출
    - (단, 차후에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할 시 증빙자료 첫면 여백에 전사자, 채취자 성명, 채취자 전화번호 등을 기록 후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으로 별도 발송해야 함을 안내하기 바람)이름, 연락처가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증빙자료 활용 제한)



- 액셀 보고양식 준수
  - DNA채취를 하지 않은 장병, 전사자의 8촌 이내 유가족(장병 부모친인척 등) 등 복수 유가족 채취 신청 가능(단, 전사자 기준 부모계 유가족 각 2명/4명 이내)
  - 장병의 부모 또는 다른 친인척이 신청할 경우에는 채취자 "부대"란은 장병의 소속부대 기록, "계급"란에는 "일반인"으로 기록하고 해당 유가족(일반인)의 성명, 관계 등을 기록 (신청한 장병의 인적사항은 비교란에 별도 기록)
  - ☞ 비교란 작성 예문: **이병 홍길동(26-70001234/00.00.00 전역) 모친 채취**
- 공문으로 보고하되 채취를 희망하는 인원을 보고하는 것인지, 보유하고 있는 키트를 사용하여 채취한 인원수에 대해 명단을 보고하는 것인지 양식을 구분하여 보고 (특히, 이미 신청했던 인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확인 요망)
- 군 부대 자체 행사(신청 수료식, 각종 축제 등)간 채취한 인원은 키트 발송 후 채취결과에 대해 공문으로 보고

## 신청자 키트 접수 시

- 보고한 인원과 키트를 접수한 인원의 명단(공문) 대조 확인
  - \* 키트를 받지 못한 경우 위병소우체국관리실 등 확인, 공문상의 송장번호 추적/확인
- 내용을 이상유무 확인 후 예하부대로 발송(사여단 인사처 → 해당 부대) (신청자 명단을 포함하여 발송하거나 카드에 인적사항을 연필로 기록 후 발송하기 바람)

## 전사자 카드 작성 시

- 전사자란에는 아는 내용을 모두 기록
  - 호적과 아령(집에서 부르는 이름)이 다를 경우 두가지 모두 기록 : 김영철(김OO)
  - 전사자 본적 및 부모는 반드시 확인 후 작성
- DNA시료 채취자(유가족)란 작성내용
  - 주민번호 : 뒷자리까지 모두 기록 (포상금 입금, 유가족 소재확인, 신원확인 시 필요한 정보임)
  - 채취기관 : 현역[해당 인원의 소속(중대급까지) 기록], 일반인[채취 부대명 기록]
  - 주소 / 연락처 : 반드시 지역 도로명 주소와 휴대폰 번호 기록
    - \* 휴대폰 번호 미기재시, 기념품(모바일상품권) 증정 불가

DNA시료 채취자(유가족)					
성명	신금철	성별	남	주민번호	60000-1000000
관계	친손자	채취일자	26. 2. 2	채취기관	0사단 0연대
주소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월드컵4강로 0번길 00, 1동 108호 (부대주소 아님)				
연락처	휴대폰 : 010-0000-0000			자택 : 062-0000-0000	

- DNA시료 제공자 포상금 입금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내용 기록 및 증빙자료 제출(19. 1.1 이후 시료채취한 자료로 전사자 기준, 최초로 DNA시료를 채취한 유가족 1명에게만 심의 후 지급하며, 다른 유가족이 19. 1.1 이전에 채취한 경우는 해당 없음)
  - \* 2명의 유가족이 채취한 경우, 1명만 입금희망 체크 / 채취자 본인의 계좌번호 이어야 하며 주민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함. 적금 증권통장은 입금 불가
- 채취자의 가족관계 I, II란에는 반드시 1명 이상 기록(부,모 또는 형제 등)
  - \* DNA시료 채취자(유가족)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 연락하기 위한
- 키트 신청시 액셀 보고양식으로 보고한 전사자 이름과 실제로 확인된 전사자 이름(전사자 카드에 기록된 이름)이 다른 경우 유태발굴감식단에 변경내용 전화 통보 및 전사자 카드 여백에 최초 보고한 이름과 다음을 연필로 기록(예 : 신청시 전사자 이름(홍길동) → 확인결과(홍일동))
- 참고사항란에 반드시 장병 소속, 계급, 군번, 전역예정일 등을 기재하고 채취자 본인 여부 또는 채취자와의 관계를 기록해야 현황 반영, 휴가 안내조치 등이 이루어짐 [예 : 0사단 0여단 상병 홍대용(25-76001200 / 26.0.0 전역) 친조부 채취]

## 증빙자료 첨부 시

- 전사자카드 뒤에 증빙자료와 같이 첨부
- 증빙자료(제적등본, 유족증 사본 등/택일) 우측 상단 여백에 “전사자 이름”, “채취자(유가족) 소속 계급 성명 (전사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등” 기록
  - 예) 전사자 : 홍OO, 유가족 : ○사단 ○연대 ○중대 ○중대 일병 홍OO(친손자), Hp 010-0000-0000
    - ※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어느 분의 증빙자료인지 확인이 제한 됨
- 제적등본을 첨부하였을 경우 전사자의 기록내용 확인 후 이름과 전사 관련 기록내용(○○지구 전투에서 전사, 또는 행방불명 등)을 형광펜이나 싸인펜 등으로 표시
  - ※ 채취키트, 전사자카드와 함께 발송이 불가한 경우에는 전사자 카드 하단부 참고사항란에 “증빙자료 별도 제출” 이라고 기록
  - ※ 증빙자료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신청자 보고 시 강조사항, 참고
- DNA시료 제공자 포상금 인금을 희망하는 경우, 전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제적등본, 전사통지서, 병적증명서 등 / 택일)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주민번호와 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어야 함(미기재시 포상금 입금 불가)

## DNA 시료 채취 시

- 시료채취 전 키트 절대 개봉 금지 / 입 안에 음식물 잔여 찌꺼기가 없는지 확인
- 채취 시 스펀지 막대로 양쪽 볼 안쪽, 잇몸을 문질러 채취(단순히 타액만 묻혀서 채취하지 않도록 주의 요망)
- 채취카드에 타액이 묻은 부위가 흰색으로 충분히 변하는 것 확인
- 채취 후 채취카드 및 스펀지 막대를 실온에서 5분 이상 노출 후 완전 건조
  - 완전 건조하지 않으면 곰팡이 발생으로 검사외뢰 불가
  - 스펀지 막대는 완전 건조 후 포장되어 있던 흰색 종이포장지에 다시 넣음
    - ※ 채취 후 채취된 부위에 다른 사람의 타액(침)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
- 시료채취 카드 앞면에 전사자명, 유가족명, 성별, 전사자와의 관계를 기록하고 카드 뒷면의 상담/채취담당란에 소속(채취기관명), 채취일자, 담당자 성명 기록 및 서명 후 보관용 봉투에 넣음
  - ※ 시료채취 카드 기록사항

- 앞면

전사자		홍길동
유가족	성명	홍영수
	성별	남
	관계	아들

- 뒷면

구분	소속	일자	성명(서명)
상담/채취담당			
접수/입력담당			
검사/외뢰담당			
검사/접수담당			

- 은박봉투 앞면에 기록사항을 네임펜으로 기록

전사자		홍길동
유가족	성명	홍영수
	성별	남
	관계	아들

- 채취카드가 담긴 보관용 봉투와 포장된 스펀지 막대를 밀봉봉투(은박봉투)안에 동봉
- 시료채취 후 장기방치 금지, 최대한 시일 내에 발송
  - ※ 한 전사자의 여러 유가족이 채취하는 경우, 동일인이 2회 채취하지 않도록 하기바람(장병이 휴가 중 부친의 유전자 시료를 채취해서 제출하겠다고 한 뒤 자신의 시료를 재채취/제출하여 동일한 유전자형이 나온 사례가 있음)



## 키트 발송시

- 사(여)단급 이상 실무자는 전자사카드 기록내용(기록사항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것은 확인 후 발송), 증빙자료, 키트 이상유무(공팡이 발생여부, 내용물 이상유무 등) 등을 전체적으로 최종 확인
  - \* 유해발굴감식단으로 발송 후 발송기록(발송일자, 송장번호 등) 대장에 유지
  - \* 전자사, 유가족 정보공유(유해발굴감식단 ↔ 해당 부대) 및 기록 누락사항 확인 등을 위해 전자사카드 첫 페이지/증빙서류를 복사하여 보관
  - ☞ 보관부서: 사(여)단 인사처, 기타 부대 담당부서 / 보존기간: 1년
- 은박봉투, 전자사카드, 증빙자료를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1건으로 동봉한 뒤 봉투에 넣어서 발송
  - \* 여러 명의 시료를 종합하여 발송할 경우 박스 또는 봉투에 담아 한 건의 택배로 발송 (개별 택배로 발송 시 분실 우려 및 택배 예산 낭비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
- 수신자 부담 착불로 발송
  - \* CJ대한통운(1588-1255) 또는 우체국 등기소포로 발송 (타 택배사 이용 불가)

## 기타 사항

- 전사자의 다른 유가족 旣 채취 여부 전화 확인(유해발굴감식단 유가족관리과)
- 장병(남자)을 기준으로 전사자와의 관계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가족관계 분석 제한으로 시료채취 불가(외증손자, 외증중손자, 진외증손자, 진외증중손자, 전사자가 친할머니의 남자형제인 경우 등) 또한, 전사자의 여자사촌(중남매), 중손녀, 중증손녀, 증손녀, 외증손녀, 여자증질(5촌)도 시료채취 불가
- 장병 및 가족 등 여러 명이 시료채취 참여시에도 1회에 한하여 휴가 조치 (3박 4일 권장 / 지휘관 판단 하 최대 7일 이내) 조치
- 증빙자료 미제출 인원 키트 : 검사보류자로 별도 관리
  - \* 임영부대(교육부대)에서 채취한 인원이 제출하지 못한 증빙자료는 배치된 부대(근무부대)에서 확인하여 국유단으로 발송
- 검사제외, 보류된 인원에 대해서는 채취부대의 업무담당자가 유가족에게 해당 사유를 안내(안내 미실시에 따른 민원 방지)
- 각급 부대 자체 채취행사(신병 수료식, 지역 축제 등)를 통해 채취한 유가족에 대해서는 유해발굴감식단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발송하고 있음 (채취키트 부족 시 사전 유해발굴감식단으로 신청)
- 채취한 DNA시료를 검사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10~12개월이며 검사결과가 나온 이후 연 1회 검사결과에 대해 안내서신을 발송하므로 채취자 주소가 변경된 경우 유해발굴감식단(1577-5625)으로 전화 주셔야 함을 안내바람
-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증빙자료 여백에 전사자, 유가족 이름 등을 기록하여 CJ대한통운 택배 또는 우체국 등기소포(착불)로 유해발굴감식단에 제출해 주셔야 함을 안내 바람
  - \* 증빙자료 접수 이유
    - ① 전사자와 유가족분의 관계를 확인하여 채취대상 해당 여부(8촌 이내)를 확인하기 위함
    - ② 차후 DNA 비교분석 결과 일치할 경우 제적등본 자료 분석을 통해 신원확인 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생존해 계시는 다른 유가족분의 시료채취 및 재검증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함
    - ③ 제적등본상엔 기록된 전사 또는 실종 관련 기록내용을 확인하여 병적자료와 대조함으로써 해당 전사자의 명확한 병적 및 신원을 확인하기 위함

### 3. 유가족 DNA 시료채취 우수부대 사례 (민·관·군 협업 예비군부대 유전자 시료 채취활동)

▶ 민·관·군 협업 6·25 전사자 유가족 집중 찾기활동 추진 : '21년도~

○ 추진 / 협조사항

구분	추진 / 협조사항
지자체 (전통군경 유족회포함)	① 지역 전사자 명부 활용('23년 既 배부), 유가족 정보 제공(→ 군 부대, 예비군지휘관) * 전사자 명부 최신화(既 시료확보 표시 등, 엑셀파일) 제공 * 국유단 → 지자체, 군 부대 * 보존 수해 유가족 중 미시료채취 유가족의 상이한 정보(주소, 전화번호 등)에 대해 최신화 정보 제공 : 지자체 → 군 부대 ② 미수습 6·25전사자 유가족 찾기 홍보(지역 가용매체, 가용조직단체, 이장 연계) ③ 군 부대 요청시 이장단, 읍·면·동 업무담당자 소집교육 지원 ④ 예하 행정기관(주무부서(보훈), 관련부서(민원) 포함) 협조 관련 공문 전파 * 도·광역시 → 예하 시군구 → 예하 읍·면·동 ⑤ 전통군경 유족 명단 최신화 공유(→국유단), 시료 미채취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 지원 (→예비군지휘관) ⑥ 종료 후 적극 지원 행정직원 수시 표창(국유단 추천)
軍 부대	① 전사자 명부 + 보존수해 자료 활용, 시군구, 읍·면·동으로부터 관련 자료 (제적등본에 유가족 정보 기록) 접수 후 유가족 탐문 + DNA 시료채취(예비군지휘관) * 전사자 명부 : 국방동원정보체계 탑재 ② 미수습 6·25전사자 유가족 찾기 홍보 [지역 지자체(도·광역시~ 읍·면·동 연계)] ③ 이장 소집교육(예비군지휘관) 및 홍보 요청(해당 예비군지휘관 → 읍·면·동) ④ 미수습 6·25전사자 유가족 찾기 관련 지자체 협조(서신 or 방문) * 사단(도지사·광역시장 협조서신 발송), 여단(책임지역 시군·구청장 협조서신 발송), 대대(책임지역 시군·구청장 방문 협조), 예비군지휘관(책임지역 읍·면·동장 방문 협조) ⑤ 미수습 6·25전사자 유가족 찾기 추진 공문 지시, 채취현황 공유/지휘관 보고 ⑥ 종료 후 성과 우수 예비군지휘관 수시 표창

○ 추진결과(시료채취 현황)

구분	경상도		경기인천·제주·강원·충청		전라·서울	
	1차 추진 ('21년)	2차 추진 ('24년)	1차 추진 ('22년)	2차 추진 ('25년)	1차 추진 ('23년)	2차 추진 ('26년)
채취인원	3,292명	655명	722명	652명	506명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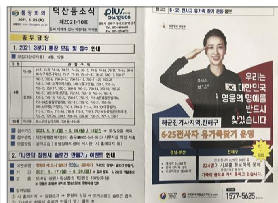
\* 연간 채취인원(11,000 여명)의 4.4%~25.4% 비율

▶ 장려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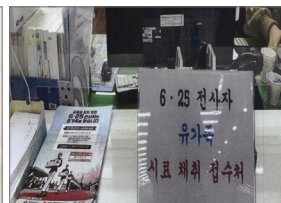
- 군 부대 주도(사·여단, 대대), 지자체(시·군·구/ 읍·면·동)협조 하 지역별 전사자명부 활용 제적등초회 TF(전담인력) 구성으로 유가족 식별/시료채취 성과 향상
- 지자체 협조 하 지역방송(전면광고), 지역방송, 현수막 제작, 가용매체 활용을 통한 홍보
- 여단장(대대장) 주관 하 주 단위 추진평가 / 지자체(시·군·구)실무자 토의 및 협조, 여군·동기부여로 시료채취 성과 향상, 원활한 업무추진



▲ 지역신문 전면 광고 홍보



▲ 반상회보 홍보



▲ 시료채취 접수/안내창구 운영

### 3. 유가족 DNA 시료채취 우수부대 사례(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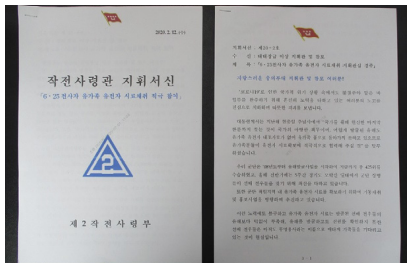
- ▶ 주요 관광지 및 지역 축제 간 기동채취반 운영(발굴기간 중 발굴부대 간부 지원)
  - \* 임진각, 감악산 출렁다리, 마장호수, 산정호수, 북한산 입구 등에서 홍보부스 운영
  - \* 전승행사, 양양 송이축제, 화천 산천어 축제 등 지역별 축제 시 홍보활동
- ▶ 신병수료식, 부대 개방행사 등 자체 홍보/채취행사 활성화
  - \* 육군 인사행정 서비스 캠프(The Camp) 공지, 지휘서신 발송, 홍보부스 운영, 홍보영상 방송, 안내문 배부, 중앙 방송안내 등
- ▶ 유가족 유전자 시료 집중 채취활동 적극 추진(6월, 10월), 전 부대 전수조사 시행
- ▶ 지역 관공서 홍보 협조 (홍보 현수막 달기운동, 통합방위회·이장단 협의회 시 홍보, 전광판 홍보, 지역 소식지 게재, 기관 홈페이지 게시 등)
- ▶ 농협 홍보활동 협조 : 문자발송, 입출식 통장·ATM 기기 하나로 마트 홍보
- ▶ (주) 에스원(차량 랩핑·고지서 홍보), 티몬(유해발굴사업 응원 및 시료채취 참여 신청 접수) 홍보활동
- ▶ 종교단체 소식지 홍보, 지역 케이블 TV 자막방송 송출, BIS(버스정보시스템) 등 홍보
- ▶ 지역 보훈단체, 「1사 1병영」 MOU 체결 기업체와 연계된 홍보활동
- ▶ 지역 내 마을회관, 노인 복지회관 등 탐문 채취
- ▶ 예비군전력 업무 담당자 워크숍 간 사업 홍보교육(수입군부대 / 매년 초)
- ▶ 홍보 전단지, 홍보 현수막 등 제작/활용, 군 차량 랩핑, 복지시설 영수증 홍보문구, 휴대폰 문자 발송 등
- ▶ 홈페이지, SNS 활용 홍보 활성화 : 채취실적, 성과분석 자료, 홍보내용 등 게시
- ▶ 시료채취 우수 실무자, 우수 예비군지휘관 포상
- ▶ 주기적인 성과분석, 부대별 순회 홍보 및 업무지도 활동 등



▲ 시료채취 전담반 기동홍보/채취행사



▲ 시료채취 홍보부스 운영



▲ 지휘서신



▲ 이장단 협의회 홍보



▲ 지역 책임부대 현수막 홍보



▲ 유해발굴감식단 유튜브 채널 개설



▲ 농협 하나로마트 홍보



▲ (주) 에스원 홍보



▲ 지역 케이블 TV 자막방송 홍보



▲ 차량 랩핑 홍보



## 4. 홍보서신 예문

군 부모님께

귀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 드립니다.

국방부에서는 6·25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쳤으나 미처 수습되지 못한 채 아직도 이름 모를 산야에 홀로 남겨진 호국용사들의 유해를 찾아 조국의 품으로 모시는 「유해발굴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해까지 국군전사자 만천여 분을 모셨습니다. 또한 6·25전사자 유해들의 신원확인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지금까지 268位의 호국영웅들을 유가족과 조국의 품으로 돌려보내 드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유해발굴사업의 어려움은 더욱 더 커져가고 있으며 특히, 지금까지 11만여 개의 유가족 DNA시료를 확보하였으나, 미수습 6·25전사자 유해 12만 여 구를 고려한다면 아직도 요원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군 복무중인 아드님의 친가, 외가에 6·25전쟁 미수습 전사자(8촌 까지)가 계신지 확인하셔서 DNA시료 채취를 할 수 있도록 아드님에게 알려주시기 바라며, 참여장병에게는 휴가를 조치하겠습니다.

유해발굴사업은 아직도 이 땅 어딘가에 외롭게 묻혀 계시는 호국용사들이 한 분도 남지 않을 때까지 추진되어야 하는 호국 보훈 사업입니다. 더 많은 전사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그리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지금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부디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 년 월 일  
제0000부대장 소장 드림

DNA시료 채취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000부대 인사참모처 인사행정계획장교 : 02)000-0000 / FAX 000)000-0000

## 5. 홍보방송 안내문안(입·퇴소식 행사시 활용)

### ▶ 최초 : 행사장 개방 후 일정인원 입장 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국가에서는 6·25전쟁 당시 미수습된 13만 여위의 호국 용사들의 유해를 찾아 국립현충원에 모시는 숭고한 국가적 호국보훈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6·25전사자 신원확인을 위해 유해를 찾지 못한 전사자의 친가위가 8촌 이내 친인척분들을 대상으로 유가족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니 장병 및 가족분들중에 아직 유해를 찾지 못한 전사자가 있으신 유가족분은 ( )에 마련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부스로 이동하셔서 유전자 시료채취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전자 시료채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상품권과 해당 장병에 대해 최대 6박 7일간의 휴가가 제공되며 특히, 전사자를 기준으로 최초로 유전자 시료채취에 참여한 유가족 한 분에 대해서는 1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6·25전사자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는 전국에 있는 시,군,구 보건소와 군 병원, 보훈병원, 적십자병원 등에서 시행하고 있으니 주변 분들께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며 오늘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6·25전사자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를 희망하시는 분은 행사부스로 이동하셔서 유전자 시료채취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2 차 : 입(퇴)소식 20분 전, 10분 전

안내말씀 드립니다.

국가에서는 6·25 전쟁 당시 참전하셨다가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전사자 분을 찾아 드리고 있습니다. 전사하신 분들이 아직도 가족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친위가 8촌 이내의 유가족분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입대장정 가족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 )에서 시료채취를 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시료채취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방법은 1577-5625로 전화를 주시거나 가까운 보건소나 예비군 읍·면·동대로 가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시료채취에 참여하시는 장정들에게는 최대 6박 7일간의 휴가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의 참여로 여러분들의 가족을 찾을 수 있습니다.

### ▶ 3 차 : 입(퇴)소식 종료 후 안내방송

안내말씀 드립니다.

국가에서는 6·25전사자 신원확인을 위해 유해를 찾지 못한 전사자 친인척분들을 대상으로 유가족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니 ( )에 마련된 부스로 오셔서 시료채취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참여하신 분들께는 상품권과 함께 해당 장병에게 최대 6박 7일간의 휴가가 함께 제공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6·25전사자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1577-5625, 1151기7기 - 5161215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 입·퇴소식 전후 장병과 가족들이 함께 있고, 집중할 수 있는 시기 고려 3~5회 실시



## 📍 예비군부대(지역대, 읍·면·동대, 기동대)

### 1. 확인 / 강조사항

- ▶ 홍보물(포스터, 리플렛 등)을 활용하여 해당 관공서, 각종 단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실시합니다.

\* 관공서 홈페이지 게시, 홍보 포스터 부착, 홍보 안내문·리플렛 비치 등

- ▶ 각종 교육훈련 간 예비군 및 교육 참석자를 대상으로 유해발굴 사업, 유가족 DNA 시료채취 업무에 대해 홍보교육을 실시합니다.

\* 활용자료 : 국유단 홈페이지 게시자료(사업홍보 동영상, DNA시료채취 홍보 애니메이션, 교육자료 등)

- ▶ 해당 관공서(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등)와 업무협조를 통해 전입 신고를 하는 지역 주민 중에 6·25 전사자 유가족 DNA 시료채취 대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 전사자명부, 보훈수혜 자료 등을 활용하여 지역 내 유가족 소재를 확인 후 DNA 시료를 채취합니다.

지참서류 : 전사자 제적등본 또는 유족증 사본, 전사통지서, 병적증명서 등(택일)

\* 전사자 1명당 부·모계 유가족 각 2명(최대 4명)까지 DNA 시료 채취가 가능하므로 전사자와 촌수가 가까운 다른 유가족이 있는지 확인 후 채취(채취 전 旣 시료채취자가 있는지 국유단 확인)

- ▶ 전사자 기준, 최초로 DNA 시료채취에 참여한 유가족 1명에 대해 심의 후 포상금(10만원)이 지급되므로 포상금 희망여부 등을 확인바랍니다.(최초 DNA 시료채취자가 아닌 경우, 포상금 미지급)

- ▶ 채취한 DNA 시료 발송 전에 수입군부대 인사처에 전화 보고 후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유가족관리과로 송부합니다.

(예비군부대에서 발송한 DNA 시료 접수 후 유해발굴감식단에서 유가족에게 소정의 기념품 발송)

\* 증빙자료 별도 발송 시 증빙자료 여백에 전사자명, 유가족명, 유가족 전화번호, 채취기관 등 기록 요망

\* DNA 시료채취 대상자, 서류 작성 방법, DNA 시료채취 방법, 시료 및 서류 이송방법은 P.11 “DNA 시료채취 업무 절차” 참고

---

# DNA 시료채취 우수기관 선발

---

## 📍 DNA 시료채취 우수기관 선발

DNA 시료채취 업무 담당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국방부에서는 송고한 호국 보훈사업에 적극 동참해주신 각 기관(담당자)의 노력에 감사드리고자 DNA 시료채취 우수기관과 유가족 찾기 지원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다음과 같이 포상하고 있습니다.

### ▶ 목적

우수기관 감사장 수여를 통해 적극적인 유가족 DNA 시료채취 활동 및 홍보 활성화

### ▶ 선발계획

- 심의시기 : 매년 12월
- 선발기관 : DNA 시료채취 우수 기관, 유가족 찾기 지원 우수기관 / 지자체, 보건소, 병무청 등
- 포상내용 : 국방부장관 감사장(감사패), 부상(기념품 등)

※ 업무 유공자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단장) 표창, 부상(기념품 등) 수여

### ▶ 우수기관 선정기준

- 연간 유가족 DNA 시료채취 인원이 다수인 기관
- 유가족 DNA 시료채취 홍보활동 / 유가족찾기 협조 우수 기관
- 지도방문 및 모니터링 결과 우수 기관

※ 전자사 신원확인에 기여한 기관에 가산점 부여



▲ 우수기관 국방부장관 감사장 수여



▲ 우수보건소 국방부장관 감사장 수여



---

# DNA 시료채취 업무 간 유의사항

---



## 📍 DNA 시료채취 업무 간 유의사항

구 분	현상/문제점	유의사항	비고
① 유가족 확인	① 유가족 DNA 기재취 여부 미확인으로 채취자 중복, 부·모계 채취인원 초과 등으로 검사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사자 정보(성명, 군번, 본적 등 확인되는 사항) 확인 후 유해발굴감식단 유가족관리과로 채취한 유가족이 있는지 문의 후 채취 Tel : 02-811-6462, 6463, 6466, 6467, 6471, 6472, 6493</li> </ul>	유해발굴 감식단 (☎ 1577-5625)
	② 채취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전사자(현충원 안장자), 민간인 사망자 등의 유가족 DNA 시료 채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해를 찾지 못한 전사자(군인, 경찰, 학도병, 노무자 등)인지 유가족 상담/확인(전사자 정보, 참전정황 등 확인)</li> <li>· 전사자 정보 확인 제한 시, 육군본부 민원실(042-550-6446, 6447), 서울현충원 민원실(02-813-9625) 등에 전사자 정보 확인 후 시료채취 진행</li> </ul>	인터넷 검색(전쟁기념관 홈페이지, 현충원 홈페이지)
	③ 유해의 DNA와 가족관계 분석이 제한되는 유가족(종손녀, 증손녀, 외증손자, 사촌여동생, 여자당 질, 진외증손자, 진외증손자 등)DNA 채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자 기준, 최기 촌수의 유가족 DNA 시료채취(전사자의 자녀, 형제 등)</li> <li>· 2촌 이내(전사자의 자녀, 형제)의 유가족 시료를 채취한 경우, 추가 채취 불필요</li> <li>· 3촌 관계의 유가족 시료를 채취한 경우, 부모계 유가족 2명 이내의 DNA 시료 채취 가능</li> <li>· 4촌 관계 이상의 유가족은 부계 2명, 모계 2명 이내의 시료채취 가능(최대 4명 이내)</li> </ul>	시료채취 업무안내서 가계도 참조
② 전사자 카드 기록	① 전사자카드 구형 양식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홈페이지(전사자 유가족 찾기) DNA 검사신청) 전사자카드 작성하기 하단부)에 게시된 최신 양식 출력 후 사용</li> </ul>	
	② 전사자 정보, 유가족 정보 미기록내용 다수, 동의서 서명란 미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사자 인적사항은 알고 있는 모든 사항을 작성해야 하며, 유가족 인적사항은 공란없이 작성해야 함 (주소는 도로명 주소로 기록)</li> <li>· 유전자검사 동의서의 성명, 생년월일, 소속(기관명) 등을 공란없이 기록</li> </ul>	
	③ 채취기관명, 상담자 미작성(채취기관 및 상담자 확인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취기관명란에 부대명 기록 (예 : 0군단, 0사단, 0여단 등 / 예비군부대는 "0사단 0여단 0대대 00 동대"로 기록)</li> <li>· 유가족 자택으로 채취키트를 발송하여 채취하는 경우, 전사자카드 채취기관란에 부대명을 기록 후 발송</li> <li>· 유전자검사 동의서(2Page) 상담자란에 시료채취를 진행한 직원의 이름 기록 (예비군지휘관이 채취한 경우에는 순번 기록)</li> </ul>	
	④ 흘림글씨로 기록한 내용 확인 불가로 유가족에게 전화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기록은 정자로 내용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li> </ul>	

구 분	현상/문제점	유의사항	비고
<b>2</b> 전자사 카드 기록	㉔ 관계란 기록 착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자사와 DNA를 채취하는 유가족과의 관계를 전자사 기준으로 정확히 기록</li> <li>(자녀 X → 아들, 딸 / 손주 X → 친(외)손자, 종손자, 친(외)손녀, 동생 X → 남동생, 여동생, 중형제 등) * 유가족 인적사항 하단부의 채취자의 가족관계란에는 전자사가 아닌 채취한 유가족을 기준으로 관계명 기록 (예: 채취자의 아들, 채취자의 친손자 등)</li> </ul>	
	㉕ 참고사항란 미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자사 참전정황, 유가족 추가 정보, 증빙 자료 제출 불가사유 등을 확인 후 참고 사항란 작성</li> <li>시료채취에 참여한 장병이 있는 경우, (장병 또는 장병의 친인척이 채취한 경우) 참여장병의 인적사항 기록 [예 : 장병의 모친이 채취한 경우 : 00사단 0여단 상병 홍길동(26-71000000 / '27.0. 전역) 모친 채취]</li> </ul>	
<b>3</b> DNA 시료 채취	㉑ 스폰지 막대로 단순히 타액만 묻혀서 채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쪽 볼 안쪽, 잇몸, 혀바닥 등을 문질러 구강내 타액과 상피세포가 골고루 묻게 채취</li> </ul>	시료채취 업무안내서, 안내문 등 참조
	㉒ 채취 후 건조하지 않고 보관용 봉투에 바로 넣어 곰팡이 발생 및 부패로 인한 DNA 미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료채취 카드와 스폰지 막대를 실온에서 5분 이상 건조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li> <li>채취카드는 보관용 봉투에 넣고 스폰지 막대는 포장되어 있던 종이포장지에 다시 넣음</li> <li>채취카드가 담긴 보관용 봉투와 종이 포장지에 담긴 스폰지 막대를 은박봉투 안에 동봉 * 오염방지를 위해 반드시 은박봉투에 동봉/발송</li> </ul>	
	㉓ 전자사가 2명일 때, 동일한 유가족의 DNA 시료를 2회 채취 (채취카드 2개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자사가 여러 명이어도 동일한 유가족의 DNA 시료는 한 번만 채취하고, 전자사 카드에 전자사의 이름과 유가족의 관계를 모두 기록 (예) 아버지와 작은아버지께서 전자하신 경우 전자사 카드 기록방법 - 전자사명 : 홍길동/홍일동 - 전자사와의 관계 : 아들/친조카</li> </ul>	
㉔ 유가족 2명 채취 시, 동일 유가족의 DNA를 2회 채취 후 채취한 유가족 정보를 다르게 기록 (DNA 검사결과 동일한 유가족으로 확인되어 채취하지 않은 유가족 재채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가족 DNA 검사결과 채취자 성별, 동일인 채취여부 등의 DNA 정보가 확인됨을 안내</li> </ul>		



구 분	현상/문제점	유의사항	비고	
④ 시료/ 증빙 자료 발송	① 부대에서 채취한 시료를 적시에 유해발굴감식단으로 발송하지 않아 유가족이 보건소, 군병원 등에 방문하여 재채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취한 시료는 증빙자료 등을 확인 후 국유단으로 즉시 발송</li> <li>• 발송 후 채취한 유가족 명단을 공문으로 통보(국유단에서 유가족에게 발송하여 채취한 시료에 대해서는 공문 통보 불필요/각급 부대에 보유하고 있는 채취키트로 채취한 경우만 공문 통보)</li> </ul>	시료채취 기관 : 군 부대, 보건소(지소), 군 병원, 보훈병원(요양원), 적십자병원, 예비군부대 등	
	② DNA시료 제출 후 증빙자료를 제출 하지 않아 장기간 보류자로 관리 (최종 접수 될 때 까지 추적확인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사기록이 포함된 증빙자료(제적등본, 유족증, 전사통지서 등/택입)를 국유단으로 즉시 발송</li> <li>• 증빙자료 제출이 불가한 경우, 참전정황을 자세히 기록한 지휘관확인서(또는 발굴장고 확인서) 제출</li> <li>• 유해를 찾지 못한 전사자가 아닌 것으로 최종 확인된 경우, 국유단으로 시료채취 제외 대상으로 공문 통보</li> </ul>	증빙자료 : 전사기록이 포함된 제적등본, 유족증 사본, 전사통지서(확인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③ 보류로 관리되고 있는 사항을 유가족 에게 안내하지 않아 위로휴가, 포상금 등에 대한 문의 전화 및 민원 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큰 봉투나 종이박스 등에 여러 건의 시료와 증빙자료를 함께 담아서 한 건으로 수시 발송 * 은박봉투, 전사자카드, 증빙자료 순으로 1건씩 철한 뒤 여러 건을 동봉하여 발송</li> </ul>	병적증명서, 훈장증, 유가족 증명서 등	
	④ 여러 건의 DNA시료, 증빙자료를 각각의 회수용 봉투에 담아 발송 (본실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체국, CJ대한통운 외 타 택배사 이용/착불 발송 (택배업체에 이용요금 증빙자료 요청/확인 등 입금 지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체국, CJ 대한통운 택배 이용/수신자 부담 착불 발송</li> </ul>	
	⑤ 채취자 핸드폰 번호 미기록으로 모바일 상품권(1만원) 문자 발송 지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사자카드에 채취자 핸드폰 번호를 반드시 기록하되 핸드폰이 없는 경우, 가족의 핸드폰 번호와 이름, 관계를 기록</li> </ul>		
⑤ 기념품 제공/ 포상금 입금	① 포상금(10만원) 입금 관련 유가족 민원 발생 및 문의전화 다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상금(10만원)은 전사자를 기준으로 최초로 DNA를 제공한 유가족 1명에게 1회 지급되며, 전사기록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지급 대상이 아님을 안내</li> <li>• 전사기록(증빙자료), 기채취 유가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검증 및 심의 후 지급되므로 유가족에게 관련 내용 설명 (유가족은 본인이 최초 채취자라고 알고 있지만, 전사자의 다른 유가족이나 본인이 이전에 채취한 사례가 다수 있음) * 포상금 입금 : 유해발굴감식단 접수 후 3개월 이내</li> </ul>	DNA가 일치하는 유해를 찾은 경우 (신원확인된 경우) : 포상금 1,000만원	
	② 2명 이상 채취 시, 1명만 포상금 희망자로 체크해야 하나 2명 모두 포상금 희망자로 체크하거나 공란으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사자의 유가족 2명 이상의 DNA 시료를 채취할 경우, 이전에 채취한 유가족이 없을 때에는 1명에게만 포상금(10만원)이 지급되므로 포상금 희망여부에 먼저 채취한 유가족 1명만 희망 체크</li> </ul>		
	③ 2명 이상 채취 시, 채취일자가 늦은 유가족을 포상금 대상으로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취자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주민번호를 반드시 기록 요망 * 부득이한 경우, 가족명의로 계좌로 입금 가능 - 대리수령인(가족) 성명, 주민번호, 은행명/계좌번호 기록 - 가족관계증명서, 수령인 통장사본 제출</li> </ul>		
	④ 포상금(10만원) 입금을 위한 필수 기록내용 누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래불가 통장, 적금통장, 타인 명의 통장, 인터넷은행(토스뱅크, K뱅크)은 입금이 불가하므로 채취한 유가족 명의의 입금 가능한 통장 계좌 기록</li> </ul>		
	⑤ 포상금(10만원) 입금이 불가능한 은행 계좌 기록			

구 분	현상/문제점	유의사항	비고
<b>㉔</b> <b>시료 채취 유가족 안내</b>	㉑ 시료 접수여부 및 유전자 비교 검사결과 전화문의의 다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취한 시료는 유해발굴감식단으로 발송하여 유전자분석과에서 유해 DNA와 유가족 DNA를 비교검사 하는데 약 10개월~12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검사 결과 일치되는 유해가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즉시 통보하고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신원확인 통보행사)"를 실시하고 있음을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전자가 일치한 유해를 찾지 못한 유가족에게는 연 1회 검사결과 안내 서신을 발송하고 있으며, 추가로 발굴되는 유해와 지속적인 DNA 비교검사를 실시하고 있음</li> </ul> </li> <li>• 유가족의 주소, 전화번호 변경 시 국유단 (☎ 1577-5625)으로 전화하도록 안내</li> </ul>	
	㉒ 전사자 미해당, 유가족 기채취, 부·모계 채취인원 초과 등으로 검사제외된 유가족에게 관련 내용 미안내 (검사제외된 사실을 채취한 장병에게 통보하지 않아 위로휴가 시행여부에 대한 민원 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취한 부대에서 "검사제외"된 유가족에게 관련 내용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 단위 군 부대 시료채취 현황(파일) 참조</li> </ul> </li> <li>• 시료 접수/증빙자료 검증 후 위로휴가 시행 안내가 이루어지므로 "검사제외" 되는 경우에는 위로휴가 대상이 아님을 사전 안내</li> </ul>	
	㉓ 유해발굴감식단에서 발송한 시료 채취 참여 장병 위로휴가 시행안내 공문 접수 후 해당 장병에게 전파하지 않아 다수의 문의전화 및 민원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유단에서 매월 발송하는 공문 확인 후 소속부대 및 해당 인원에게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문 제목 : 6·25전사자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자 상품권 발송 및 휴가 시행 통보(00년 0월)</li> </ul> </li> </ul>	
	㉔ 군 부대 이외의 보건소, 병원 등에서 채취한 후, 참여장병 인적사항을 미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료채취 참여장병의 인적사항(소속, 계급, 군번, 전역예정일 등)을 전사자카드 하단부 참고사항란에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병의 친인척이 시료채취에 참여한 경우에도 해당 장병에 대해 위로휴가 조치</li> </ul> </li> </ul>	



## Memo

---

# DNA 시료채취 업무 Q&A

---



## 📍 DNA 시료채취 업무 Q & A

DNA 시료 채취업무 수행 간 의문사항 또는 유가족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한 『DNA 시료 채취 업무 Q & A』입니다.

### 질문순서

1. 유해발굴과 전사자 의미 범위
2. 전사자 병적기록 확인가능 연락처
3. 유가족 개인정보 확인 법적 근거, 관련 공문
4. DNA 검사결과 최초 확인가능 시기 / 결과 통보방법
5. 유전자 검사 비용
6. 최초 검사 결과확인(미일치) 후 반복적 DNA 시료채취 여부
7. 질환이 있는 유가족의 DNA 시료채취 가능 여부
8. DNA 시료채취가 가능한 기관
9. 거동불편자의 DNA 시료채취(보건소 내원 불가 시)
10. 전사자 유해의 신원확인 가능확률, 유해발굴사업 지속 실시 여부
11. 전사장소를 정확히 알고 있을 경우의 발굴시기
12. 전사지역이 북한일 때 발굴계획을 궁금해 할 경우
13. DNA 시료채취 시 증빙서류 제출
14. 유전자 분석의 종류 및 방법
15. 현역장병 중 본인 외에 가족 중 DNA 시료채취를 원할 경우
16. 상품권 사용방법
17. 최초 DNA 시료채취 유가족 포상금 지급
18. 신원확인 이후 진행절차
19. 전국 보훈청 관할 구역, 대표전화

**1. Q : 유해발굴 대상이 되는 전사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사망자가 전사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질문)**

A : 군인(육·해·공군/해병대), 군무원, 경찰공무원, 소년지원병, 종군기자, 청년단원, 향토방위대원, 소방관, 의용소방관, 학도병, 노무자 등으로 사망 또는 전쟁으로 인해 실종된 자를 의미합니다.

※ 국립서울현충원 홈페이지(www.snmk.mil.kr)「안장자 찾기」에서 전사자 정보 확인 가능

**▶ 전사자 검색 방법**

1. 전쟁기념관 홈페이지 : 전쟁·군사정보 → 전사자 정보 검색



2. 국립 서울현충원 홈페이지 : 안장자 찾기 및 사이버 참배



**2. Q : 전사자 병적기록(소속부대 / 전사일자 / 장소 등)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병적확인인 전사자의 군 생활 일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해당 전사자의 군번, 계급, 소속, 전사일자 및 전사장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육군 병적조회 (민원실) : 042) 550-6446~7
- 해군(해병) 병적조회 : 042) 553-3636~7
- 공군 병적조회 : 042) 552-1541
- 경찰 기록조회 : 02) 3150-1692

- ※ 전쟁 중후 병적기록이 있더라도 일부 항목은 누락 가능
- ※ 병적확인을 위해서는 전사자의 성명, 군번, 본적, 주소, 부모 성함 등의 최소한의 자료가 있어야 추적 가능



### 3. Q: 유가족 DNA 시료채취를 위해 전사자의 제적정보와 유가족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나요?

A: 국방부에서는 전사자의 병적기록과 전사자의 제적정보(이름, 본적주소, 전사기록, 유가족 등)를 대조하여 검증한 후 생존 유가족의 소재를 확인하고 유가족과 연락을 통해 DNA 시료채취에 대해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률에 근거하여 지자체 민원부서와 업무협력을 하고 있으며, 유가족 정보제공과 관련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유가족 정보 제공 관련 질의응답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관계행정기관의 협조) ① 국방부장관은 전사자 유해의 조사·발굴 및 신원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전사자 유해와 관련된 제보나 증언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민에 대한 홍보,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 채취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공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관련 질의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답변

- 질의내용 :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채취를 하기 위해 지자체로부터 유가족의 연락처(휴대전화번호 포함)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근거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답변내용 :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및 신원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국방부는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6·25 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유가족의 연락처(휴대 전화번호 포함)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행정안전부 공문



행정안전부

## 행 정 안 전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제공관련 업무 협조 요청(6·25 전자사 유해발굴사업 관련)

1. 관련

- 가. 「주민등록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 나. 「6·25 전자사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 다. 「6·25 전자사유해의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운영규정」 제12조
- 라. 국방부 병영정책과-1420('25.3.5.), "6·25전자사 유해발굴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및 협조 요청"
- 마. 국방부 병영정책과-4970('25.7.14.), "6·25전자사 유해발굴사업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협조"

2. 위와 관련, 행정안전부 주민과에서는 매년 국방부에서 추진 중인 **6·25 전자사 유해발굴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관련 업무 지원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국유단(기동탐문관) 방문 시, 6·25 전자사의 유가족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조회 등 **관련 업무 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국방부가 해당 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자체로부터 개인정보(연락처, 휴대전화번호 포함)를 제공 받을 수 있는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질의하였으며, 제공 가능함을 회신 받아 관련 내용을 공유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 시·도에서는 해당 내용을 관할 시·군·구에도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문) 6·25 전자사 유해발굴사업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협조 1부.

2. (첨부) 6·25 전자사 유해발굴사업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관련 질의 답변 1부. 끝.



대상 공문에 첨부된 개인정보 제공 관련 질의답변 자료는 국방부 질의내용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답변내용을 첨부한 것임

행정안전부장관

관인생략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자치행정과장), 부산광역시장(자치행정과장), 인천광역시장(자치행정과장), 대구광역시장(행정과장), 광주광역시장(자치행정과장), 대전광역시장(자치행정과장), 울산광역시장(자치행정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자치행정과장), 경기도지사(열린민원실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자치행정과장), 충청북도지사(행정운영과장), 충청남도지사(자치행정과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자치행정과장), 전라남도지사(자치행정과장), 경상북도지사(새마을봉사과장), 행정지원과장, 경상남도지사(행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자치행정과장), 국방부장관(병영정책과장),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장

주무관	<b>이유진</b>	전산사무관	<b>김은희</b>	주민과장	전결 2025. 12. 22.
협조자				<b>최이호</b>	
시행	주민과-899	(2025. 12. 22.)		접수 유가족관리과-6006	(2025. 12. 23.)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운동 42		/	www.mois.go.kr
전화번호	044-205-3164	팩스번호	044-205-8945	/	reasonjin332@mail.go.kr / 대국민 공개

**4. Q : DNA 시료채취를 하면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나요? 또한 유가족에게 결과는 어떤 방법으로 알려 주나요?**

A : 유가족 DNA 시료와 발굴된 6·25전사자 유해의 유전자 분석은 국방부 유해 발굴감식단 유전자분석과에서 이루어집니다. 이후 두 가지 검사를 비교 / 분석하게 되는데 정확성이 요망되는 검사이기에 약 10~12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서는 지속적인 유해 발굴과 유전자검사 결과비교를 실시하여 각 가정으로 연 1회 '검사결과 안내서신'을 보내 드립니다.

- \* 결과통보를 위해서 신청서 작성 간 정확한 도로명주소 작성 강조
- \* 차후 주소변경 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유가족관리과로 전화 연락하도록 설명
- \* 검사결과가 일치하게 되면 확인하는 즉시, 유가족에게 전화 연락 또는 방문 통보

**5. Q : 유전자 검사를 신청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A : 전사자유해 및 유가족 DNA 시료의 유전자검사 비용은 전액 국방부에서 부담합니다. 따라서 유가족의 비용부담은 없습니다.

**6. Q : 몇 년 전에 구강상피세포 채취 검사를 해서 불일치라고 결과서신이 왔는데, DNA 시료채취를 다시 해야 하나요?  
(중복 DNA 시료채취에 대한 문의)**

A : 한 번 실시한 유전자검사 결과자료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서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발굴되는 유해의 검사결과와 비교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DNA 시료채취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복으로 채취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 \* 단, 혈액채취자의 경우 유가족 희망시 재채취(구강 상피세포 채취검사) 가능합니다.

**7. Q : 몸이 건강하지 않아도, 특이질환이 있어도 DNA 시료채취를 할 수 있나요?**

A : 네, DNA 시료채취 가능합니다.

6·25 전사자를 찾기 위해 채취되는 DNA 시료는 전사자 유해와의 DNA 일치 여부만 판단하기 위한 것이며, DNA는 건강상태와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 8. Q : DNA 시료채취는 보건소에서만 가능한가요?

A : 전국 군병원과 보건소, 보건지소, 보훈병원(요양원), 적십자병원, 병무청 병역 판정검사장, 예비군중대 등에서 DNA 시료채취가 가능하며, 전국 군병원과 병무청 병역 판정검사장 등의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해당 기관에서 채취한 DNA시료와 작성한 서류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으로 이송됩니다.

▶ 표1. DNA 시료채취 가능한 전국 군병원

구분	구분	전화번호	주소
서울-경기	수도병원	031-725-6492	경기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로 177번길 81 사99호
	양주병원	031-857-0963	경기 양주시 은현면 화합로 1133 사94-12호
	고양병원	031-963-6657	경기 고양시 덕양구 혜음로 215 사111-8호
	구리병원	031-857-6243	경기 구리시 인창2로 177
	포천병원	031-531-0803	경기 포천시 화현면 화동로 564
	서울지구병원	02-397-3744	서울 종로구 삼청로 10길 13
충청	대전병원	042-878-4757	대전시 유성구 자운로 90
	육군훈련소 지구병원	041-740-7862	충남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 사76-16호
	계룡대지구병원	042-550-4758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501-240호
대구-경북	대구병원	053-750-5171	경북 경산시 하양읍 대경로 425-41
	포항병원	054-290-2416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총무로 70 사209-131호
부산-경남	해양의료원	055-549-1763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963번길 35
전남	함평병원	061-390-5114	전남 함평군 해보면 신해로 1027
강원	홍천병원	033-435-0473	강원 홍천군 두촌면 아홉사리로 53 사81-20호
	강릉병원	033-662-7802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동해대로 4371-34
	춘천병원	033-243-0130	강원 춘천시 신북읍 방고개길 57
제주	제주기지전대 의무대	064-905-171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포우체국 사112호
	9여단 의무소대	064-905-351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사64-2호

▶ 표 2. DNA 시료채취 가능한 전국 병무청(병역판정검사장)

구분	전화번호	주소
서울지방병무청(2)	02-820-4372, 4375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3길 13
부산지방병무청	051-667-5289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
대구경북지방병무청	053-607-6391	대구 동구 동내로 63
경인지방병무청	031-240-7332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
인천병무지청	032-870-0669	인천광역시 남구 노적산로 76
광주전남지방병무청	062-230-4278	광주광역시 동구 양림로119번길 8
대전충남병무청	042-250-4284	대전 중구 중앙로16번길 5
강원지방병무청	033-240-6237	강원 춘천시 백령로 15
충북지방병무청	043-270-1307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사로 33
전북지방병무청	063-281-3284	전북 전주시 완산구 관선3길 14
경남지방병무청	055-279-9285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0번길 13
제주지방병무청	064-720-3231	제주 제주시 청사로 59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3층
경기북부병무지청	031-870-0314	경기 의정부시 전좌로 76
강원영동병무지청	033-649-4231	강원 강릉시 울곡로 2705



▶ 표 3. DNA 시료채취 가능한 전국 보훈병원(요양원)

구분	전화번호	주소
중앙보훈병원	02-2225-1542	서울 강동구 진항도로 61길 53
부산보훈병원	051-601-6074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 420
광주보훈병원	062-602-6535	광주 광산구 첨단월봉로 99
대구보훈병원	053-630-7033	대구 달서구 월곡로 60
대전보훈병원	042-939-0122	대전 대덕구 대청로 82번길 147
인천보훈병원	032-363-9711	인천 미추홀구 인주대로 138
수원보훈요양원	031-240-9008	수원 장안구 광고산로 95
광주보훈요양원	062-602-5848	광주 광산구 첨단월봉로 85
김해보훈요양원	055-340-8512	경남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127
대구보훈요양원	053-606-3016	대구 달성군 하빈면 하산길 123-23
대전보훈요양원	042-829-3014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935번길 16
남양주보훈요양원	031-579-7007	경기 남양주시 덕송2로 71

▶ 표 4. DNA 시료채취 가능한 전국 적십자병원

구분	전화번호	주소
서울적십자병원	02-2002-88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
인천적십자병원	032-899-4319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263
상주적십자병원	054-530-3099	경상북도 상주시 상서문로 53
영주적십자병원	055-949-3367	경상북도 영주시 대학로 327
통영적십자병원	055-640-1772	경상남도 통영시 중앙로 97
거창적십자병원	054-630-017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91

**9. Q : 보건소에 가서 DNA 시료채취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을 택할 수 있나요?**

**A-1 : 우편 이용 방법**

시료채취 방법이 혈액에서 구강상피세포 채취로 바뀐에 따라 유가족분 혼자서도 시료채취가 가능합니다.

집 주소와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시료채취 키트와 신청서류를 보내 드리며, 채취를 완료하신 후에는 동봉해 드리는 회수용 봉투에 넣으신 후 택배로 발송해주시면 됩니다.

※ CJ대한통운 택배(1588-1255)/우체국 등기/소포 이용 (수취인 부담)

**A-2 : 탐문담당 기동 채취**

거동이 불편한 유가족에 대해서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유가족관리과 기동탐문담당당이 직접 방문하여 DNA 시료채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0.Q : 지금까지 발굴된 유해 중에 신원이 확인된 유해는 어느 정도이며 유해발굴사업은 언제까지 실시하나요?**

A : 2000년부터 지금까지 발굴된 유해 중 신원확인 유해는 268분 (‘25년 12월 말 기준)으로 13만 여 분의 전사자 대비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적은 숫자이지만, 사업이 활성화가 되는 만큼 찾을 확률이 더 높아지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해발굴사업은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명기된 국가의 영구적 사업으로 마지막 한 분의 전사자 유해를 찾을 때까지 지속 될 것입니다. 국방부는 호국용사(참전용사)의 희생을 기억하며 기필코 그 분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11. Q : 전사자 ○○○는 전사 장소가 △△고지인데 빨리 발굴 할 수 없나요?**

A : 전사자 유해발굴은 연간계획에 의거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장장소가 정확할 경우, 제보자 동반 하에 수시 발굴도 가능합니다.

※ 6·25 전사지역, 매장지역, 제보자 목격/증언지역 발굴

※ 수시 제보지역은 수시 정밀탐사 후 발굴 실시



**12.Q: 전사자 ○○○의 사망 장소는 지금의 북한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북한지역의 발굴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A: 매년 초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서는 인터넷 또는 인트라넷의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유가족분들께 매년도 발굴계획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지역 발굴은 상호 협력 회의 등을 거쳐 실시하게 되며, 현재 북한 내 전사자 유해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부차원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3.Q: DNA 시료채취간 증빙자료(제적등본, 유족증, 전사통지서 등)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A: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이유는 전사자와 유가족분의 관계를 확인하여 채취 대상 해당여부(8촌 이내)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며 차후 DNA 비교분석 결과 일치할 경우 제적등본 자료분석을 통해 신원확인 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생존해 계시는 다른 유가족분의 시료채취 및 재검증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아울러 제적등본상에 기록된 전사 또는 실종 관련 기록내용을 확인하여 병적자료와 대조함으로써 해당 전사자의 명확한 병적 및 신원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제적등본이나 기타 증빙자료 (유족증, 전사통지서 등) 제출이 불가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시료채취 시 작성하시는 전사자카드상에 자세한 관련 정황과 증빙자료 제출이 불가한 사유를 기록하시면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없이 시료채취를 하실 수 있습니다.

**14.Q: 왜 저는 검사를 할 수 없나요? 유전자 검사 종류와 방법을 알고 싶어요.(검사방법에 따른 검사가능 가족관계 제한에 관련된 질문)**

A: 현재의 유전자 검사 방법은 3가지로 mt-DNA(미토콘드리아), Y-STR(성염색체), A-STR(상염색체)로 나뉘지는데 검사 방법에 따라 검사가능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검사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DNA 검사 대상 가계도 참고)

## DNA 시료채취 대상 선정 / 이해를 위한 DNA 검사 방법(신원확인용)

### mt-DNA 비교검사 (미토콘드리아 검사 / 모계 확인 검사)

- 모계 유전되는 미토콘드리아 DNA를 비교해 혈연관계를 확인하는 검사
- 검사 가능자 : 전사자의 어머니, 남녀 형제, 전사자의 외삼촌, 이모, 이모의 아들 / 딸, 딸의 2세대 (전사자 외손자)

사람의 유전정보를 나타내는 DNA는 세포의 핵 내에 존재하는 핵 DNA 뿐 아니라 세포 내 세포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에도 존재합니다. 난자와 정자가 만나 수정이 이루어질 때, 정자의 머리 부분에 있는 핵 DNA만이 난자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정자의 꼬리에 위치한 미토콘드리아 DNA는 남게 됩니다.

따라서, 수정란에는 난자의 미토콘드리아 DNA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계유전이 됩니다. 미토콘드리아 DNA를 이용한 모계 확인검사는 외가 쪽 가족들, 자녀들 부모가 살아계시지 않는 형제, 자매의 혈연관계를 규명 할 수 있습니다.

### Y-STR 비교검사 (성염색체 검사 / 부계확인 검사)

- 남성들만이 가지고 있는 Y염색체를 분석하여 혈연관계를 규명하는 검사
- 검사 가능자 : 전사자의 아버지 / 남형제, 아들  
친손자 / 3~4촌 남자 (친숙부/친조카) 및 직계비속

인간의 성(性)을 결정하는 것은 성염색체이며, 성염색체인 Y 염색체는 남성성이 발현되도록 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이는 부계유전 됩니다.

즉, 고조할아버지-증조할아버지-아버지-삼촌-아들-형제-친손자에 이르기까지 친손집안의 Y 염색체는 대를 이어 유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Y 염색체를 분석하는 부계확인 검사를 통해, 남자조상이 같은 집안의 혈연관계 성립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A-STR 비교검사 (상염색체 검사 / 친자확인 검사)

- DNA 유전자 감식(비교)을 통해 부·모·자의 혈연관계를 규명하는 검사
- 검사 가능자 : 전사자와 동일 혈족인 전사자의 남녀형제 및 전사자의 아들, 딸

개인은 부모로부터 각 50%의 확률로 유전자를 물려받게 됩니다. 이 유전정보를 활용하여 부모와 자식 간의 생물학적 친자관계를 검증하는 것이 바로 친자확인 검사입니다. 즉, 각각의 유전자에 대해 부모로부터 동일한 유전자형을 하나씩 물려받게 되며, 아이의 유전자형이 부모의 것과 일치할 경우 친부 / 친모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15.Q : 현역 장병 중 본인 외에 다른 가족이 DNA 시료채취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장병이 직접 휴가, 외박을 이용하여 서류 작성 및 시료채취를 해온 후 부대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가까운 시일 내에 휴가 및 외박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각급 부대에서 시료채취를 원하는 장병 가족의 주소와 연락처를 보고하면 국방부 유해 발굴감식단에서 직접 시료채취 키트와 서류를 발송해 드리고, 회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로 장병의 조부모, 부모, 친척 등 전사자와 촌수가 가까운 유가족이 시료채취에 참여하게 되면 보다 정확한 유전자 비교분석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동일하게 위로휴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6.Q :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에 참여하여 상품권을 받았습니.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A : 상품권은 모바일 상품권 또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모바일 문화상품권은 6·25전자사 유가족으로서 DNA 시료채취에 참여해주신 분들에게 1만원의 상품권이 문자로 지급되고 있으며 GS25, CU, emart24, 세븐일레븐, 미니스톱과 같은 전국 편의점 어디에서나 사용이 가능하고, CGV에서 영화를 관람하거나 교보문고에서 책을 구입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다른 사용처가 궁금하시면 인터넷에서 '컬처랜드'를 검색하여 다양한 사용처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011, 017 번호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상품권 발송 불가

### <문자 발송 예시>



#### 유전자 시료채취 기념상품권 발송

국방부 유희발굴감식단입니다.  
6·25전자사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에 참여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기념품으로 1만원권 모바일문화상품권을  
지급해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02-811-6471로 연락바랍니다.  
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 [상품권 안내]

- 상품명 : 통합 모바일 문화상품권(충전가능)
- 금액 : XXXXXX원
- 바코드번호 :XXXX-XXXX-XXXX-XXXX
- 유효기간 :  
XXXX년 XX월 XX일 ~ XXXX년 XX월 XX일
- 이용안내 : <http://qre.kr/AAAAAA>
- 잔액조회 : <http://qre.kr/XXXXX>

### <모바일 문화상품권 사용처>



#### 온라인 사용방법

문화상품권을 결제계좌로 충전하여 다양한 온라인 사이트에서 사용하세요!

### ▲ 온라인 사용처



#### 온라인 사용방법

문화상품권을 결제계좌로 충전하여 온라인 사이트에서 사용하세요!

### ▲ 오프라인 사용처

온누리상품권은 1만원 지류 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 활성화구역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합니다. 가맹점은 전통시장통통 ([www.sijangtong.or.kr](http://www.sijangtong.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 온누리 상품권(지류)



### 17. Q : DNA 시료 제공을 한 후 포상금 10만원을 지급받겠다고 안내받았는데 어떻게 지급되나요?

A : 유전자 시료 제공을 해주셨더라도 무조건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의 지급조건 3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인원에 대해 별도 심의를 통하여 결정 된 분께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지급 조건>

1. 시행령 시행(19. 1. 1.) 이후 DNA 시료 제공
2. 6·25전쟁 참전 / 전사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 제적등본(전사여부 기록), 유족증, 병적증명서, 전사통지서, 전사확인서(전사확인증) 등
3. 동일 전사자를 기준으로 여러명의 유가족이 DNA시료를 제공했을 경우, 최초로 시료제공한 유가족에게만 지급

심의는 분기별로 진행되며, 심의 이후 1~2개월 이내에 포상금 10만원이 1회 입금됩니다.

※ 심의 일정 : 1분기(2~3월), 2분기(5~6월), 3분기(8~9월), 4분기(11월)

그러나 아래의 경우처럼 포상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 되오니 유가족 시료채취 담당자는 반드시 아래 사항을 확인하신 후 정확한 포상금 입금 정보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포상금 입금을 위해서는 본인의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가 정확하게 기입되지 않으면 입금이 제한되니 반드시 유의해서 기입바랍니다.

#### < 포상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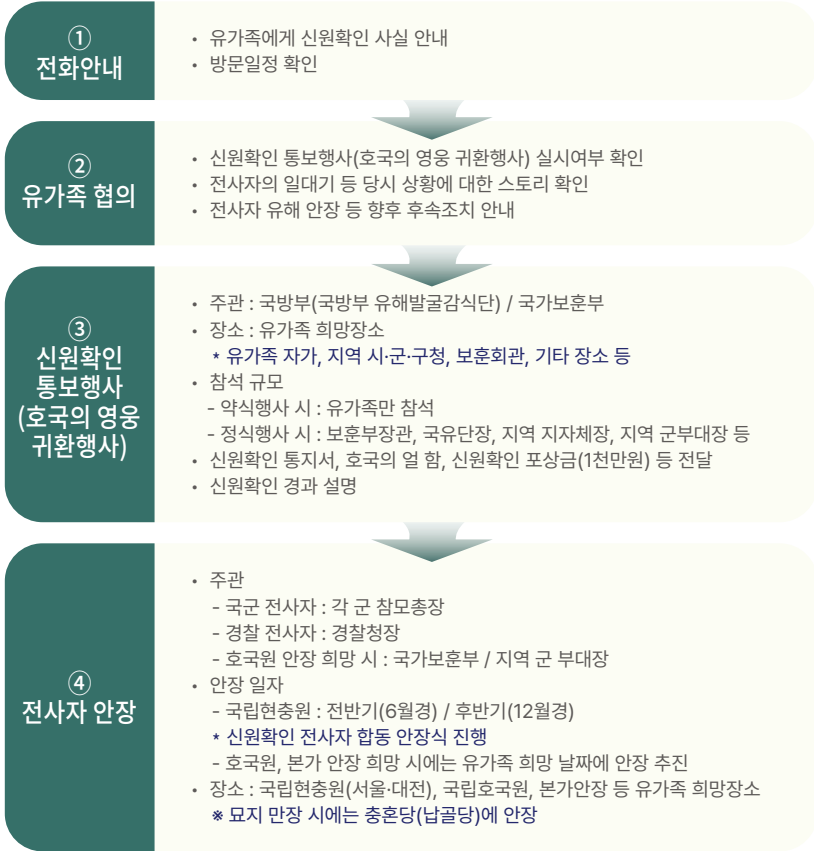
1. 전사자카드에 희망여부 미 표기 또는 "불희망"으로 표기한 경우
2. 시료제공 유가족 본인 명의의 계좌정보를 기입하지 않은 경우
  - 예) 유가족 임의로 본인 대신 가족의 계좌정보를 기입
3. 지급이 제한되는 계좌정보 기입
  - ※ 거래가 중단된 통장, 적금 통장, 증권사 통장, 인터넷 은행(토스뱅크, K뱅크),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지급 제한
4.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다만, DNA 시료를 제공한 유가족이 아래와 같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가족명의로 계좌로 포상금 지급을 희망할 경우에는 대리 수령인이 거래하는 은행명, 대리 수령인의 거래 계좌번호, 대리 수령인 성명을 기입하고, 비교란에 반드시 대리 수령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수령인 통장사본을 별도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개인사정(생활고 등)에 의한 통장 거래 중단,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는 경우

**18.Q : 국방부 유해발굴단에서 발굴한 유해의 유전자와 유가족이 제공한 시료의 유전자가 일치되어 신원이 확인된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되는가요?**

A : 아래의 순서와 같이 진행됩니다.



▲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



▲ 합동안장식



### 19.Q : 6:25전사자 유가족에 대한 보호지원 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A : 보호급여금, 교육, 의료, 복지 등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보호처(Tel:1577-0606)에 문의하시면 되며 전국 보호청 관할구역 및 대표전화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관명	관할지역	주소·전화번호
서울 지방 보호청	서울특별시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마포구, 서대문구, 강동구, 송파구,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은평구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6 (02)3785-0815
서울 남부 보호지청	서울특별시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동작구, 강남구, 서초구	서울 서초구 효령로 142 (02)3019-2300
서울 북부 보호지청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북구,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서울 도봉구 도봉로150나길 6 (02)944-9260
경기 남부 보호지청	수원, 안양, 과천, 안산, 평택, 오산, 의왕, 군포, 시흥, 화성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8 (031)259-1801
경기 북부 보호지청	의정부, 동두천, 구리, 고양, 남양주, 파주, 포천, 양주, 연천, 가평, 양평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589 (031)843-5748
경기 동부 보호지청	성남, 하남, 광주, 용인, 안성, 이천, 여주	경기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54 (031)289-2302
인천 보호지청	인천광역시, 부천, 광명, 김포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239 (032)588-4100
강원 서부 보호지청	춘천, 원주, 화천, 양구, 홍천, 인제, 철원, 횡성	강원 춘천시 후석로440번길 64 (033)258-3609
강원 동부 보호지청	강릉, 속초, 동해, 태백, 삼척, 고성, 양양, 정선, 평창, 영월	강원 강릉시 동해대로 3310 (033)610-0606
대전 지방 보호청	대전광역시, 논산, 계룡, 금산, 부여	대전 서구 한밭대로 713 (042)280-1114
충남 서부 보호지청	보령, 서산, 당진, 태안, 홍성, 예산, 청양, 서천	충남 홍성군 홍성읍 문화로 91 (041)630-3700
충남 동부 보호지청	세종특별자치시, 천안, 아산, 공주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길 19 (041)589-4900
충북 남부 보호지청	청주, 진천, 보은, 영동, 옥천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47 (043)285-3213
충북 북부 보호지청	충주, 제천, 단양, 음성, 괴산, 증평	충북 충주시 중원대로 3230 (043)841-8800

기관명	관할지역	주소·전화번호
대구 지방 보훈청	대구광역시, 상주, 김천, 구미, 경산, 성주, 칠곡, 고령, 군위, 청도	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 (053)230-6010
경북 북부 보훈지청	안동, 영주, 문경, 봉화, 의성, 영양, 청송, 예천	경북 예천군 행복1길 5 (054)650-1400
경북 남부 보훈지청	경주, 포항, 영천, 영덕, 울진, 울릉	경북 경주시 금성로 355 (054)778-2600
부산 지방 보훈청	부산광역시	부산 중구 중앙대로148번길 13 (051)469-8991
울산 보훈지청	울산광역시, 양산	울산 남구 대공원입구로 7 (052)228-6500
경남 동부 보훈지청	김해, 창원, 밀양, 거제, 창녕, 의령, 함안	경남 창원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10 (055)981-5600
경남 서부 보훈지청	진주, 사천, 통영, 남해, 하동, 고성, 함양, 거창, 합천, 산청	경남 진주시 월아산로 2082-5 (055)752-3881
광주 지방 보훈청	광주광역시, 나주, 담양, 장성, 화순, 강진, 장흥, 해남, 완도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062)975-6500
전남 동부 보훈지청	순천, 여수, 광양, 곡성, 구례, 보성, 고흥	전남 순천시 팔마2길 7 (061)720-3200
전남 서부 보훈지청	목포, 무안, 영광, 진도, 함평, 신안, 영암	전남 목포시 관해로 29 (061)273-0093
전북 동부 보훈지청	전주, 남원, 완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무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 10 (063)239-4500
전북 서부 보훈지청	익산, 군산, 정읍, 김제, 부안, 고창	전북 익산시 선화로1길 58-5 (063)850-3702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청사로 59, 3층 (064)710-8411



## Memo



# 부록

- 
- › 6·25 전쟁 개관
  - › 6·25 전쟁 주요 전투 상황
  - › 만화로 보는 쉽고 빠른 6·25 전사자 유가족 DNA 시료채취
  - › 6·25 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



## 6.25 전쟁 개관

1950년 6월 25일 새벽, 38도 선에서 북한군의 기습남침으로 시작된 1129일(3년 1개월) 동안의 전쟁은 대한민국이 유엔 참전국과 함께 공산세력의 적화 의도를 막아낸 '세계자유수호전쟁'이자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한 전쟁'이었다.

### ▶ 전쟁발발의 배경 및 원인

제2차 세계대전 후 미·소의 냉전은 심화되었다. 더불어 한반도도 1945년 광복과 동시에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남북이 분단되어 서로 대립하게 되었다. 1948년 정부 수립 후에도 좌·우익의 참여한 대립으로 남한의 사회는 몹시 불안정하였다.

6·25전쟁은 이러한 남한의 정세와 스탈린의 세계공산화 전략, 모택동의 전쟁지원 약속 등에 고무된 김일성의 무력적화 통일 야욕에서 비롯된 기습남침으로부터 시작되었다.

### ▶ 전쟁발발의 배경 및 원인



### ▶ 국군 및 유엔군 피해

(단위:명)

구분	전사	부상	포로/실종	계
국군	137,899	450,742	32,838	621,479
유엔군	40,667	104,280	9,931	154,878
미군	(36,940)	(92,134)	(8,176)	(137,250)
계	178,566	555,022	42,769	776,357

※ 공산군 피해(추정): 1,773,600여 명(사망/부상: 1,646,000명 포로/실종: 127,600명)

### ▶ 민간인 피해

(단위:명)

사망	부상	난치/실종	계	기타
373,599	229,625	337,744	990,968	피난민: 320만, 미방인: 30만, 고아: 10만

※ 북한 민간인 피해(추정): 150만여 명

### ▶ 북한이 대한민국을 기습남침한 명백한 증거

- ① 공개된 구소련 비밀문서 기록 : 스탈린 남침 승인(1950. 3. 30.)
  - 소련의 북한 군사고문단장(바실리예프)이 작성
  - 스탈린 승인 후 북한군 작전국장(유성철)이 번역
- ② 북한주재 소련대사가 1950년 6월 15일에 본국에 보고한 문서
  - "6월 25일 새벽에 진격한다." (공격개시일 기록)
- ③ 북한군 정찰명령 제1호(1950. 6. 18.), 전투명령 제1호(1950. 6. 24.)
  - "공격준비를 6. 22, 24:00까지 완료할 것"과 공격개시 이후의 임무 명시
- ④ 북한군 제2사단참모부 지령(준비명령)
  - "병사들은 6. 24, 19:00까지 식사종료 후 준비할 것"
  - "23:00에 공격선 도착 및 공격준비할 것"
- ⑤ 주요 증언 / 기타
  - "김일성이 전쟁을 발의하고 스탈린이 승인" (소련수상 후르시초프 회고록)
  - "내가 남침 선제타격계획 작성" (북한군 작전국장 유성철)
  - \* 1992년 이후 러시아 교과서에 '북한의 남침'이라고 명시

## ▶ 전쟁의 경과

구분	전선의흐름	기간
기습남침	북한의 기습남침, 서울 피탈	3일
1 지연전	한강선 → 낙동강선	1개월
	낙동강 방어작전	15개월
2 반격	낙동강선 → 38도선	15일
	북진	38도선 → 압록강선
3 후퇴	평양북방에서의 전투	15개월
	평양 → 서울이남	7개월
재반격	38도선을 연한 공방전	7개월
4 교착전	휴전협상과 고지쟁탈전(38도선·휴전선일대)	2년

※ 전쟁초기의 전선은 전황의 유동성에 따라 각 한 달여 만에 남으로는 낙동강, 북으로는 압록강까지 오르내렸다.

### 1 북한군 기습남침과 낙동강선으로의 후퇴 (1950. 6. 25. ~ 9. 14.)

국군은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겼다(6.28). 한국을 돕기 위해 유엔군이 참전(7.1)하였지만 개전 한 달여 만에 낙동강선까지 후퇴하였다(6. 25. ~ 7. 31.). 이후 40여 일(8.1. ~ 9.14.) 동안 낙동강방어선을 필사적으로 사수하여 인천 상륙작전과 반격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 2 인천상륙작전과 압록강으로의 진격 (1950. 9. 15. ~ 10. 24.)

인천상륙작전(9. 15.) 성공과 낙동강전선에서의 반격으로 전세를 역전한 국군과 유엔군은 서울을 탈환(9. 28.) 후 반격개시 보름만에 38도선을 회복하였다(9. 16. ~ 9. 30.). 10월 1일 38도선을 돌파한 아군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압록강 인근의 초산까지 진격하여(10. 1. ~ 10. 26.) 통일을 눈앞에 두는 듯하였다.

### 3 중공군의 개입·새로운 전쟁 (1950. 10. 25. ~ 1951. 7. 9.)

국군이 압록강(초산)까지 진격하고 있을 무렵(10. 26.) 이미 25만여 명의 중공군은 압록강을 건너와 국군과 유엔군의 등뒤에서 기습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10월 25일에 시작된 중공군의 대규모 공세는 이듬해 5월까지 5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다.

국군과 유엔군은 12월 초 중공군의 2차 공세로 인해 평양철수(12. 4.)를 개시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서울을 적에게 내어 주었다(1. 4.후퇴). 급기야 평택과 삼척을 연하는 37도선까지 후퇴하였다가 서울을 재탈환(3. 15.) 이후부터는 38도선을 중심으로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계속하였다.

### 4 휴전협상과 휴전선 일대의 고지쟁탈전 (1951. 7. 10. ~ 1953. 7.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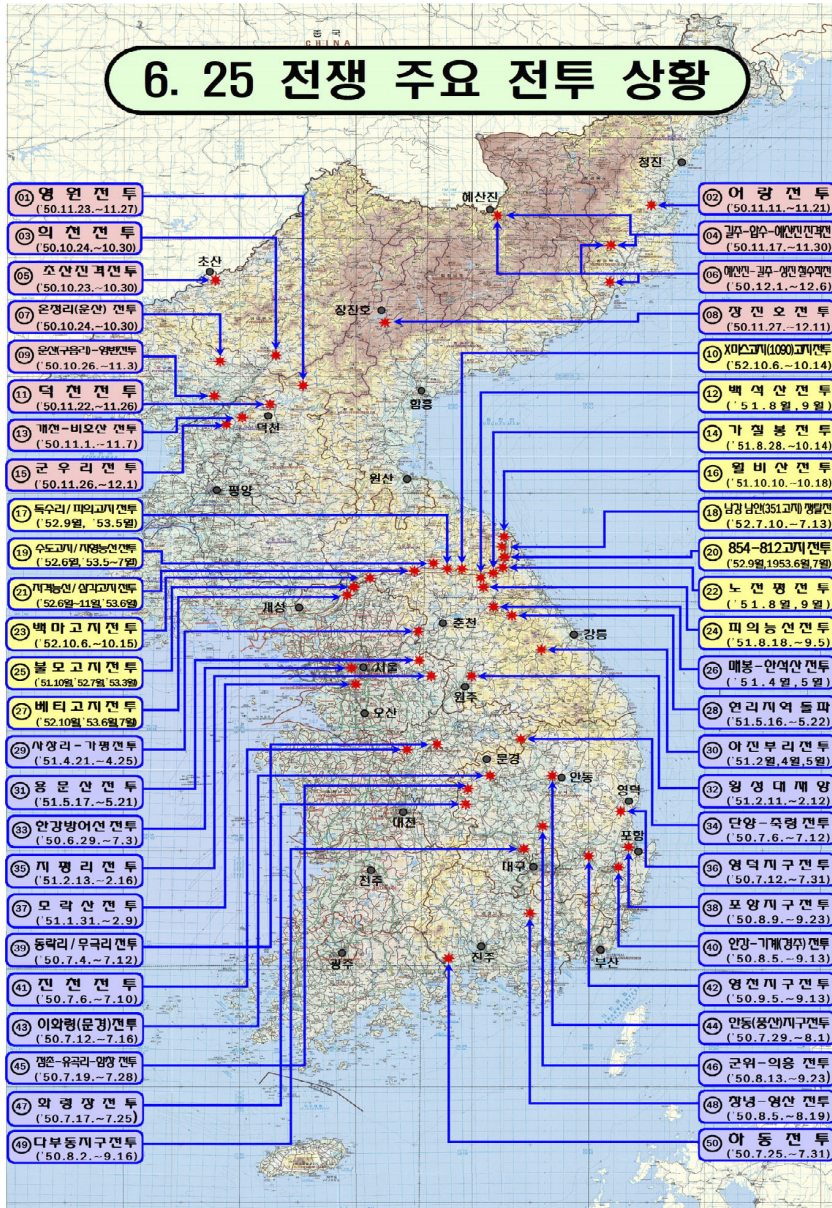
유엔군과 공산군은 1951년 7월 10일 휴전협상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2년간이나 계속된 휴전협상 기간 동안 남북한은 한 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현재의 휴전선 일대에서 치열한 고지쟁탈전을 계속하였다. 전쟁개시 3년여 만인 1953년 7월 27일에 정전협정이 조인되면서 남북한은 휴전선으로 분단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자료출처 : 1129일간 전쟁 6·25(육군 군사연구소 발행)



# 6.25 전쟁 주요 전투상황



---

만화로 보는 쉽고 빠른 6·25  
전사자 유가족 DNA 시료채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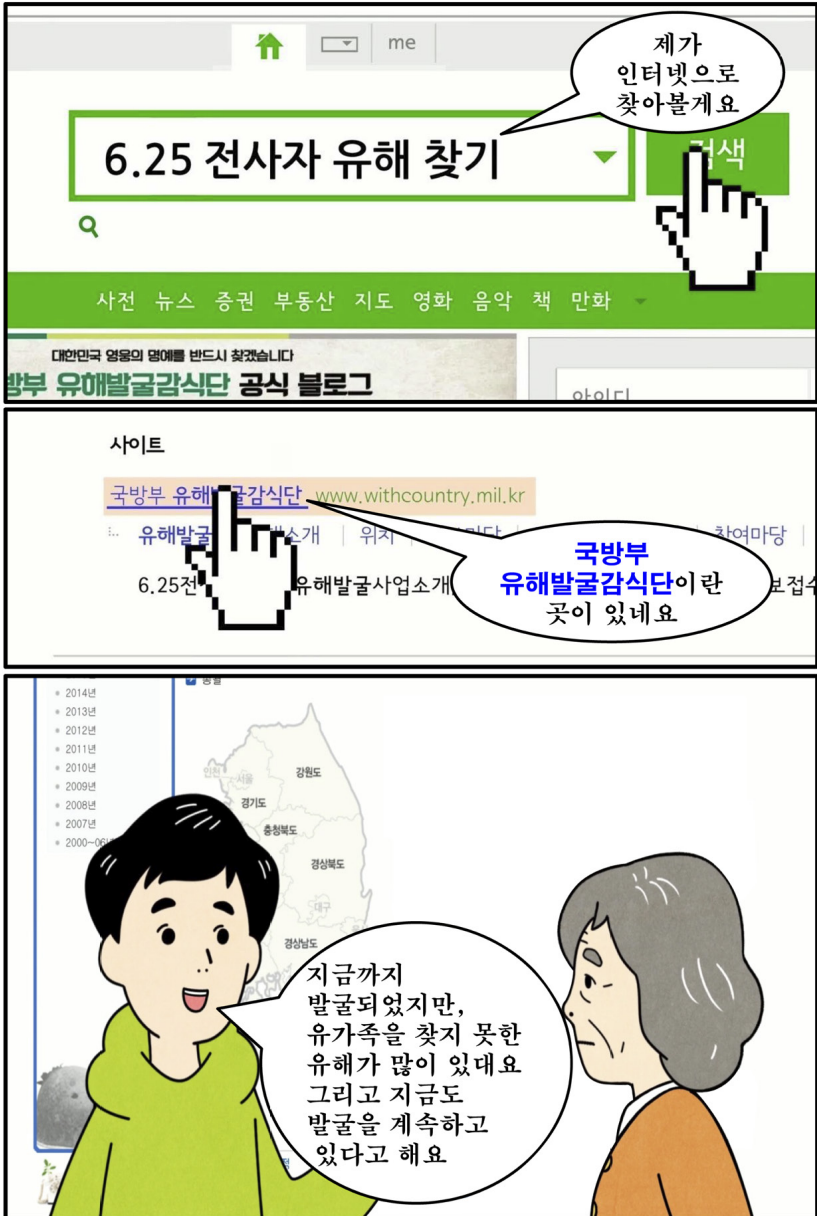
---

# 만화로 보는 쉽고 빠른 6·25전사자유가족 DNA 시료채취












"단 한번의 참여가 그들을 집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유전자 검사 절차



**1 시료채취**

- 채취대상: 전사자의 전·외가 8촌까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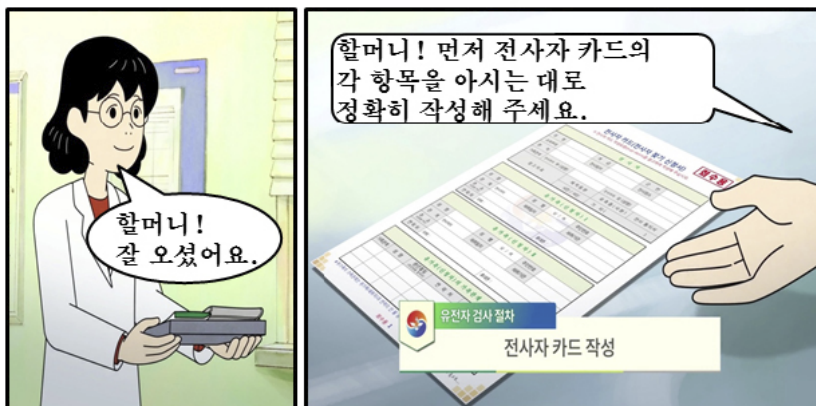
검사신청

- 전국보건소 > 지역별 보건소 바로가기, 군병원 > 군병원 바로가기
- \* 보건소/지소, 군병원 방문 시 무료건강검진 제공 (당뇨, 건강기능 등 30여 항목)
- 유해발굴감식단·함훈연미·자기방문 채취
- 전화·홈페이지 (유전자 채취키트를 자택으로 우편발송)
- 지점서명: 전사자 채적등본, 유족증, 전사통지서 등 (약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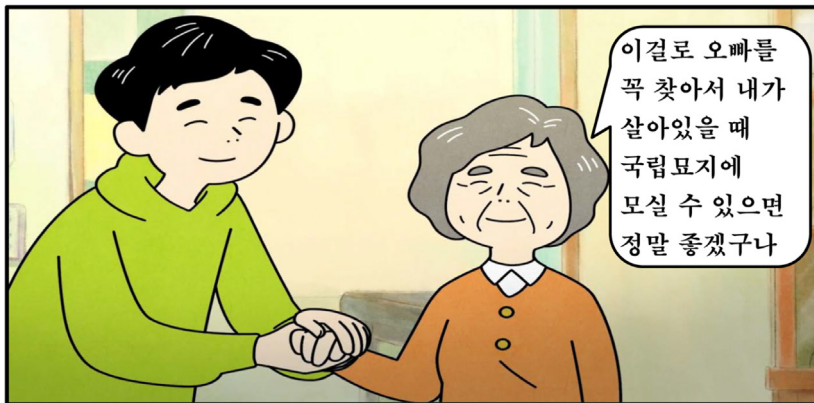
**참여방법**

보건소, 보훈병원(요양원), 군병원, 격심자병원, 병무청 직접 방문

보건소, 군 병원 병무청 예비군동대에서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대한민국 영웅의 명예를 반드시 찾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하는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진사자 신원확인을 위한 유가족 DNA 시료채취 참여	진사자 유해소재 정보
<p><b>대상자</b> 유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국민 누구나</p> <p><b>유해발굴</b> 거제군 봉곡소 및 봉곡저수지, 보훈병원(순안역), 군병원, 애마교 등 4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서원현충원) 발은 혹은 친화신형</p> <p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신원 확인 시 <b>최대 1,000만원</b> 포상금 지급</p>	<p><b>정보자료</b> 6·25 전쟁 당시 전사자 직할 매장, 육격 또는 들은 내용 군 복무 시절 전사자 유해, 유물을 목격했거나 들은 내용 일상 활동(예: 등산, 역로취취 등) 및 각종 공사 간 전사자 추정 유해, 유물을 직접 발견했거나 들은 내용</p> <p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정보자에게 <b>최대 70만원</b> 포상금 지급</p> <p style="font-size: small; text-align: center;">(유해발굴 결과에 따라, 상의에 의거 차등 지급)</p>
<p style="text-align: center;">06984 서울특별시 동작구 명동로 250 대표번호 1577-5425 <a href="http://www.witbcountry.mil.kr">www.witbcountry.mil.kr</a> 다자민 주홍명인사실 070-7420-1122 표지출력 이상민(명사)대리과 2차기 간첩-제거팀 명인사실 신고는 군사정보지원처명부 9-1327</p>	

"할머니의 감나무"

(영웅을 찾는 쉽고 빠른 길)  
동영상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MAKRI)  
MND Agency for KIA Recovery & Identification

The End



## Memo

##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약칭: 6·25전사자발굴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309호, 2024. 2. 13., 타법개정]

국방부(병영정책과) 02-748-5254

### 제1조(목적)

이 법은 6·25전쟁 중의 전사자로서 수습되지 못한 유해를 조사·발굴하여 국립묘지에 안장함으로써 고귀한 희생에 대한 넋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2. 22.>

1. “6·25전쟁”이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6·25전쟁을 말한다.
2. “전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6·25전쟁 중 사망하였거나 전쟁에 참전하였다가 실종된 자를 말한다.
  - 가. 군인
  - 나. 군무원
  - 다. 경찰공무원
  - 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 바. 정부의 승인을 받아 6·25전쟁 중 전투나 군 작전에 종군한 기자로서 그 전투 또는 군 작전에 종군하던 중 사망하였거나 실종된 자
  - 사. 「전사근로동원법」(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4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동원된 자,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그 밖에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나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거나 실종된 자
3. “전사자유해”란 제2호에 따른 전사자 유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유해수습, 현장 감식 등을 포함한다. 이하 “조사·발굴”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전사자유해를 조사·발굴하고 국립묘지에 안장하며 전사자유해의 유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유해발굴감식단의 설치)

- ①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유해발굴감식단을 둔다.



- ② 유해발굴감식단에 단장 1인과 필요한 군인 및 군무원을 둔다.
- ③ 단장은 영관급 장교 또는 군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 ④ 그 밖에 유해발굴감식단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①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등에 관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21. 4. 13.>
  1. 체계적인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전사자유해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3. 전사자유해 발굴의 선진화에 관한 사항
  4. 전사자유해 발굴의 국제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③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13.>
- ④ 국방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21. 4. 13.>
- ⑤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1. 4. 13.>
- ⑥ 제5항에 따라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21. 4. 13.>

### 제7조 삭제 <2015. 3. 27.>

### 제8조(전사자유해의 보호 및 발견신고 등)

- ① 누구든지 전사자의 유해 또는 유품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전사자로 추정되는 유해를 발견한 사람은 그 현상(現狀)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관찰·조사·구출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부대장(이하 “행정기관장등”이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③ 제2항의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장등은 그 신고내용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를 보호하기 위하여 발견 현장에 대하여 안내판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조치를 취할 것을 행정기관장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 ①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토지·공유수면(公有水面)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조사·발굴할 수 있고, 조사·발굴에 필요한 범위에서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등을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농작물·나무 등의 장애물을 제거·변경할 수 있다.
- ②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를 조사·발굴하려는 때에는 조사·발굴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 또는 관리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등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제3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제3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 있는 지역에 해당하거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48조제5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3조제5항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청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그 협의 결과에 따라 전사자유해를 조사·발굴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발굴 과정에서 매장유산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바로 국가유산청장에게 알리고 국가유산청장과 다시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2024. 2. 6., 2024. 2. 13.>

- ④ 국방부장관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에 전사자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도 불구하고 전사자유해를 조사·발굴하여 안장할 수 있다.
- ⑤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을 마친 때에는 해당 토지등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하여 제13조에 따라 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제2항의 조사·발굴계획에 따라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관리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⑦ 제2항에 따른 조사·발굴계획의 내용·수립방법 및 통지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전사자유해의 신원확인 및 유해·유품의 보존 등)

- ① 국방부장관은 발굴된 유해를 전사자유해로 인정한 때에는 유전자 시료(試料)를 채취하는 등 신원확인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원확인을 거친 전사자유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한다.
  1. 유가족이 확인된 전사자유해: 유가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을 말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는 “전사자”로 본다. 이하 같다)의 의견에 따라 본가로 봉송(奉送)하거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한다.
  2. 유가족이 확인되지 아니한 전사자유해 또는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전사자유해: 유가족이 확인될 때까지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유해보관소에 보관한다.
- ③ 국방부장관은 발굴된 유해가 전사자유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수사가 필요한 경우라고 인정할 때에는 그 유해의 발굴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전사자유해와 함께 발굴된 유품은 전사자유해의 신원확인과 호국·보훈 관련 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인정기준·절차와 신원확인의 기준·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의2(유엔군유해의 발굴)

- ① 국가는 6·25전쟁 중 사망하였거나 전쟁에 참여하였다가 실종된 유엔군의 유해를 조사·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유엔군유해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유전자 검사)

- ①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의 신원과 유가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사자유해와



유가족에 대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전자 검사결과 등 관련 자료를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 제12조(포상금)

국방부장관은 제보·증언 및 발견신고 등을 통하여 전사자유해의 발굴이나 신원확인 등에 기여한 사람에게 그 기여한 정도와 유해 조사·발굴의 결과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손실보상)

- ① 국방부장관은 타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3.>
1. 제9조의 조사·발굴에 따른 타인 토지등에의 출입·땅파기 등 일시 사용이나 농작물·과수 등의 피해에 따른 손실. 다만, 땅파기한 후 원상복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및 안장 등의 업무에 따라 타인에게 발생한 손실
-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관계행정기관의 협조)

- ①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및 신원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9., 2015. 3. 27.>
1. 전사자유해와 관련된 제보나 증언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민에 대한 홍보,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 채취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공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3. 27.>

### 제15조(권한의 위임)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발굴감식단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6조(벌칙)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사자의 유해 또는 유품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처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9.>

### 제1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조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16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0.>

**부칙 <제8924호,2008. 3. 21.>**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방부장관이나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국방부 직할기관의 장이 행한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신원확인 및 안장 등은 이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 ③(손실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방부장관이나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직할기관의 장이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및 안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타인에게 끼친 손실에 대하여는 제13조를 적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부칙 <제10465호,2011. 3. 29.>(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 ②부터 ⑭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250호,2012. 2. 1.>(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2조”로 한다.
- ②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563호,2014. 5. 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44호, 2014. 11. 19.>(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④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⑤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236호, 2015. 3.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09호, 2015. 12. 22.>(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14416호, 2016. 12. 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39호, 2017. 7. 26.>(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 ④ 6·25 전자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 ⑤부터 ③82)까지 생략

#### 제6조 생략

**부칙** <제15045호, 2017. 11. 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92호, 2021. 4. 13.>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071호, 2022. 12. 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51호, 2023. 3. 21.>(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4. 2. 6.]

[시행일: 2024. 3. 22.] 제1조

####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 생략

- ② 6·25 전자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전단 중 “제48조제2항·제3항”을 “제48조제2항·제3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제3항”으로, “문화재가 있는”을 “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명승이 있는”으로, “제48조제5항”을 “제48조제5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3조제5항”으로 한다.

- ③부터 ③까지 생략

#### 제9조 생략

**부칙** <제19590호, 2023. 8. 8.>(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 생략
- ② 법률 제19251호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등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제3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제3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 있는 지역에 해당하거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48조제5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3조제5항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그 협의의 결과에 따라 전사자유해를 조사·발굴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발굴 과정에서 매장유산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바로 문화재청장에게 알리고 문화재청장과 다시 협의하여야 한다.
- ③부터 <53>까지 생략

## 제10조 생략

부칙 <제20309호, 2024. 2. 13.>(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 생략
- ② 법률 제19590호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전단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문화재청장에게 알리고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알리고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 ③부터 ③까지 생략

### 제5조 생략

## 6·25 전자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6·25전자사발굴법 시행령)

[시행 2025. 6. 2.] [대통령령 제35562호, 2025. 6. 2., 일부개정]

국방부(병영정책과) 02-748-5254

### 제1조(목적)

이 영은 「6·25 전자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유해발굴감식단의 업무 등)

- ① 「6·25 전자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유해발굴감식단(이하 “발굴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자자유해의 소재 조사 및 발굴
  2. 전자자유해의 신원 및 유가족 확인
  3. 전자자유해 발굴 자료의 수집·보존 및 관리
  4. 전자자유해 발굴 홍보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전자자유해의 조사·발굴 및 신원확인과 관련하여 지시하는 사항
- ② 유해발굴감식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발굴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발굴단에 필요한 부서를 두되, 그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④ 발굴단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3조(유해발굴감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① 전자자유해의 조사·발굴·신원확인 등 업무의 객관성·공정성 유지 및 학술적 자문을 위하여 발굴단에 유해발굴감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삭제<2015. 7. 13.>
  2. 법 제10조에 따른 전자자유해 인정 및 신원확인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법 제13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자자유해의 조사·발굴·신원확인 등에 관하여 단장이 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발굴단 소속 장교·군무원 중에서 단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5. 6. 2.>
-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⑧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발굴단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⑩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제2호 및 제4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단체 등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위원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6. 2.]

### 제3조의3(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단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 또는 해임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조의2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5. 6. 2.]

### 제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 삭제 <2015. 7. 13.>

### 제6조(전자자유해 보호조치)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조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 발견 현장에 대한 별표 2의 안내판 설치

2. 유해 발견 현장이 침수되거나 얼어붙거나 무너지거나 떠내러가는 등 현장의 상태가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 및 주기적인 현장 확인
3. 토지소유자등에 대한 유해 발견 사실의 통지

### 제7조(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계획의 내용 등)

-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6·25전쟁 전사(戰史) 연구와 관련된 기록 확인
  2. 조사 대상 지역에 대한 탐문 계획
  3. 발굴 대상 지역 및 기간
  4. 발굴 현장의 통제 및 기록 유지 사항
-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사자유해 조사·발굴계획의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사자유해 조사·발굴 통지서로 하고, 전사자유해 조사·발굴에 착수하기 7일 전까지 토지소유자등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 ③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사자유해 조사·발굴 담당자증에 따른다.
- ④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8조(전사자유해의 인정기준)

국방부장관은 발굴된 유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사자유해로 인정할 수 있다.

1. 전사자유해 매장에 관한 제보(신고·증언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접수된 지역으로서 전사자유해 매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발굴된 유해
2. 전쟁사 연구 및 조사를 통하여 전사자유해 매장 가능성이 확인된 지역에서 발굴된 유해
3. 전사자의 것으로 인정되는 유품이 발견되거나 6·25전쟁에서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총기 등의 군용품과 함께 발굴된 유해

### 제9조(전사자유해의 신원확인기준 등)

- ① 국방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전사자유해로 인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전사자유해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1.>
  1. 유해와 함께 발굴된 유품의 대조
  2. 6·25전쟁 관련 사료(史料), 전사자 병적부 등 자료 분석
  3. 참전용사, 지역주민 및 제보자 등의 증언 비교
  4. 법의인류학적(法醫人類學的) 분석
  5. 유전자 검사·비교, 중첩비교(Superimpose) 등 법의학적 분석
- ② 제1항에 따라 전사자유해의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제10조(발굴된 유품의 보존)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전사자유해와 함께 발굴된 유품은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유품보관소에 보관한다. 다만, 유품 중 폭발물과 탄약류는 전사자유해 발굴지역을 관할하는 군부대장에게 인계한다.

### 제10조의2(유엔군유해의 처리 절차)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유엔군의 유해를 조사·발굴하여 처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유엔군으로 추정되는 유해는 전사자유해와 동일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사·발굴하고 그 신원 및 국적을 확인한다.
2. 해당국과 협의하여 유엔군유해의 국적을 결정한다.
3. 국적이 결정된 유엔군유해는 해당국의 요청에 따라 조치한다.

#### 제11조(유전자 검사결과 등 보관·유지)

-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 검사결과 등 관련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11.>
  1. 별지 제3호서식의 유전자 검사 동의서
  2. 유전자 검사 정보 색인부
  3. 유전자 검사결과에 대한 파일 또는 출력물
- ② 제1항의 자료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유전자 검사기관 또는 장소에 전사자유해의 신원이 확인되거나 유전자 검사에 동의한 사람(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이 폐기를 요청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 제12조(포상금 지급기준)

법 제12조에 따른 포상금은 별표 3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9. 4. 2.>

#### 제13조(손실보상의 절차 등)

- ① 법 제13조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적은 별지 제4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국방부장관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손실의 원인이 해당 토지소유자등이 책임질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
- ③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지급통지서에 따라 청구인에게 보상금 지급을 통지하고, 통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한다.
- ④ 손실보상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적은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에 손실액의 내용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하며,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다.

#### 제14조(권한의 위임)

법 제1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단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 11., 2021. 10. 14.>

1.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등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2. 삭제<2015. 7. 13.>
3.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전사자유해 보호조치 요청
4. 법 제9조에 따른 전사자유해 조사·발굴(조사·발굴계획의 수립, 통지, 협의 등을 포함한다)
5. 법 제10조에 따른 전사자유해 인정 및 신원확인
6. 법 제11조에 따른 유전자 검사 및 자료 보관
7. 법 제1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8. 법 제13조에 따른 손실보상

**제15조 삭제** <2015. 7. 13.>

**부칙** <제20832호,2008. 6.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령을 폐지한다.

**제3조(유해발굴감식단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령」에 의하여 설치된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은 이 영에 의한 유해발굴감식단으로 본다.

**부칙** <제23807호,2012. 5. 2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4224호,2012. 12.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발굴된 유해의 발굴에 기여하여 포상금을 지급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840호,2014. 12. 9.>(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6393호,2015. 7. 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74호,2015. 12. 30.>(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7083호, 2016. 4. 5.>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72호, 2019. 4. 2.>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 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 ① 별표 3 제3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본인의 유전자 시료를 제공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② 별표 3 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본인의 유전자 시료를 제공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1274호, 2020. 12. 22.>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전사자 관련 인적사항이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전사자 제적등본, 전사 통지서, 유품 등의 자료를 제공하여 전사자유해의 신원이 확인된 유가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2041호, 2021. 10. 14.>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기본계획 수립권자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장이 수립한 기본계획은 제14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으로 본다.

**부칙** <제35562호, 2025. 6. 2.>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한 차례를 초과하여 연임한 위원은 해당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위원의 직을 유지한다.

## 별표 / 서식

[별표 1] 삭제 <2015.7.13.>

[별표 2] 안내판(제6조 관련)

[별표 3] 포상금 지급기준(제12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전사자유해 조사·발굴 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 전사자유해 조사·발굴 담당자증

[별지 제3호서식] 유전자 검사 동의서

[별지 제4호서식] 손실보상청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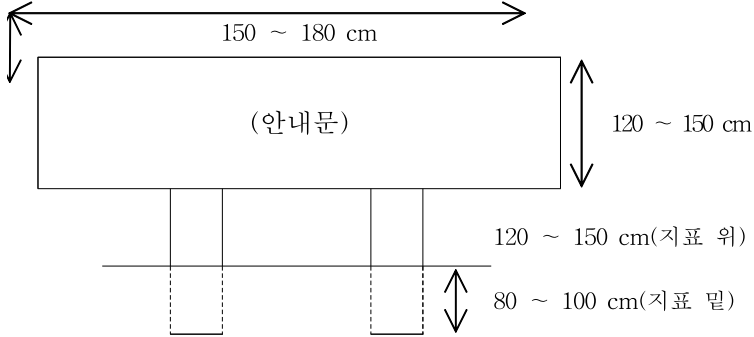
[별지 제5호서식] 보상금지급통지서

[별지 제6호서식] 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

## ■ 6·25 전자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 안내판(제6조 관련)

#### 1. 안내판의 규격



- 가. 두께 및 재질: 2 ~ 3 mm 두께의 철판
- 나. 바탕색: 흰색
- 다. 글씨: 검은색

#### 2. 안내문의 "예문"

### 안 내 문

1. 이 곳은 「6·25 전자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자 유해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로 신고된 지역입니다.
2. 유해의 조사·발굴 업무가 끝나기 전까지는 관계자 외의 출입 또는 사용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전자자로 추정되는 유해 및 유품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되므로 이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합니다.
4. 관련사항 문의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전화번호)  
또는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전화번호)

년 월 일

○○ 시장(군수·구청장)

■ 6·25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0. 12. 22.>

포상금 지급기준 (제12조 관련)

1. 전사자유해 소재에 대하여 제보·증언 및 발견신고 등을 통하여 전사자유해의 발굴에 기여한 사람에게는 최대 70만원의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전사자로의 인정이 유보된 유해는 발굴된 유해의 수에 관계없이 20만원을 지급한다.
  - 가. 1구를 발굴한 경우: 20만원
  - 나. 2구 이상을 발굴한 경우: 발굴된 유해의 수를 기준으로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3. 전사자유해 소재에 대하여 제보 및 증언 등을 하고, 그 지역의 현장조사에 함께 참여하였으나 유해를 발굴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제보자에게 숙박 여부 및 이동거리 등을 고려하여 20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 가. 본인의 유전자 시료(試料)를 제공하여 전사자유해의 신원확인에 기여한 사람에게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 나. 유전자 시료 제공을 한 경우: 1만원
  - 다. 유가족으로 확인된 사람이 유전자 시료 제공을 한 경우: 10만원
  - 라. 유전자 시료 제공으로 전사자유해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 최대 1천만원의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4. 전사자의 유가족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전사자 관련 인적사항이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전사자 제적등본, 전사 통지서, 유품 등의 자료를 제공하여 전사자유해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공한 유가족에게 최대 1천만원의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 6·25 전자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4.5.>

<b>전자자유해 조사 · 발굴 통지서</b>				
일 정	조 사	년 월 일 ~ 년 월 일		
	발 굴	년 월 일 ~ 년 월 일		
장 소		(시·도)	(시·군·구) (리)	(읍·면·동) 번지
조사 발굴 인원	대표자	소속:	계(직)급:	성명:
	기타 인원	소속:	계(직)급:	성명: 포함한 을 명
조사 · 발굴 사유				
기 타				
<p>「6·25 전자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알립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margin-top: 20px;"> <div style="text-align: center;"> <p style="font-size: 1.2em; font-weight: bold;">유 해 발 굴 감 식 단 장</p> </div> <div style="border: 2px solid red;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color: red;"> <p>관인</p> </div> </div> <p style="margin-top: 20px;">(토지 등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      귀 하</p>				

210mm×297mm[백상지 80g/㎡]

■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2.30.>

(앞쪽)

**전사자유해  
조사·발굴 담당자증**

(증명사진)

(발 급 번 호)  
(성 명)

**국 방 부**

50mm×90mm [백상지 150g/㎡]

(뒤쪽)

소 속 :  
성 명 :  
직 위 :  
군 번 :  
(생년월일)  
유효기간:

위 사람은 「6·25 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전사자 유해 조사·발굴  
업무수행을 위해 임명·위촉된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유 해 발 굴 감 식 단 장**

50mm×90mm [백상지 150g/㎡]



■ 6·25 전자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4.5.>

<b>유 전자 검사 동 의 서</b>				
검사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법정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상담자	성명		생년월일	
동의서 작성일자	년            월            일			
<p>1. 유전자검사의 목적: 6·25전쟁 전자자 발굴유해·유가족 신원확인</p> <p>2. 검사대상물의 보존기간                      : [ ] 전자자유해 신원확인 시까지 [ ] 동의권자의 추후 폐기요청 시까지</p> <p>3. 본래 목적 외로 검사대상물을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                      : [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함</p> <p>4. 검사대상물을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때에 개인정보 포함 여부                      : [ ] 개인정보 제외        [ ] 개인정보 포함</p> <p>※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자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본인이 충분히 이해하였다고 판단할 때에 [ ]에 V표를 하십시오.</p> <p>가. 유전자 검사의 이익과 위험에 대하여 검사기관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 [ ]</p> <p>나. 전자자유해의 신원확인 또는 동의권자의 폐기요청에 따른 폐기대상 검사대상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방법·절차에 따라 폐기됩니다. ---- [ ]</p> <p>다. 유전자검사기관이 폐업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검사대상물을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검사대상물을 이관합니다. ---- [ ]</p> <p>라. 동의권자가 위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했다라도 검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 ]</p> <p>마. 유전자 검사기관은 동의권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 ]</p> <p>바. 본인의 유전자 검사결과에 대하여 확인·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p> <p>사. 이 검사동의서, 검체, 검사 관련 자료는 「6·25 전자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보관·관리됩니다. ---- [ ]</p> <p style="text-align: center;">위의 사항에 대한 <b>동 의 는 자 발 적 의 사 에 따 른 것 이</b>를 확인합니다.</p>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 <p>확인    검사대상자        (서명 또는 인)</p> <p>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p> <p>          상    담    자        (서명 또는 인)</p> </div>				
<p>※ 첨부서류: 법정대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p>				

210mm×297mm[백삼지 80g/㎡]

■ 6·25 전자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4.5.>

**손실보상청구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피해자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현거주지 주소		
청구인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피해자와의 관계		
	의		
	현 거주지 주소		
피해자와 청구인이 다른 경우에는 위임사유를 적고 피해자와 청구인이 각각 날인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별도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사항	재산 소재지		
	피해 종별		
	피해 수량		
	피해재산 산정금액		
그 밖의 사항(피해자 및 청구인 연락처, 특이사항 등)			
<p>「6·25 전자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청구인 성명:</p> <p style="text-align: right;">(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b>유해발굴감식단장</b> 귀하</p>			
첨부서류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뒤쪽의 손실보상청구서 제출 시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증질지(60g/㎡)]



(뒤쪽)

**손실보상청구서 제출 시 참고사항**

1. 청구서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청구인이 피해자가 아닐 때에는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에게 보상청구를 위임하는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4. 청구 시 작성할 지면이 부족하면 별지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5. 청구서에는 아래 손실보상청구서 제출 시 첨부서류 각 호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와 유해발굴감식위원회에서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그 밖에 재산상 손실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도면, 사진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청구서 제출 시 첨부서류**

1. 토지의 피해 평가내용
2. 과수의 피해 평가내용
3. 묘목의 피해 평가내용
4. 임목의 피해 평가내용
5. 농작물의 피해 평가내용
6. 공작물의 피해 평가내용
7. 그 밖의 사유에 해당하는 손실 평가내용 등

※ 첨부서류는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6·25 전자사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5.23>

**보상금지급통지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발급번호
청구인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피해자와의 관계 의		
	주소		
보상 결정 사항	보상 원인		
	보상 금액		보상 일자
	보상 방법		
그 밖의 사항			
<p>「6·25 전자사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귀하가 손실을 입은 재산에 대하여 유해발굴감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이 보상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유 해 발 굴 감 식 단 장 <span style="border: 2px solid red; padding: 2px 10px;">적인</span></p> <p style="text-align: center;">귀하</p>			

210mm × 297mm [백상지 80g/㎡]



■ 6·25 전자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4.5.>

**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

\* 뒤쪽의 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 제출 시 참고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피해자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현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 )		
신청인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피해자와의 관계	
	현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 )		
	※ 피해자와 신청인이 다른 경우에는 위임사유를 적고 피해자와 신청인이 각각 날인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별도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지급통지서 번호(통보일자)				
보상결정 금액				
이의신청 사유				
이의신청 내용				
그 밖의 사항(피해자 및 신청인 연락처, 특이사항 등)				
「6·25 전자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 지급결정에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b>유해발굴감식단장</b> 귀하				
첨부서류	손실액의 내용에 관한 증명서류(뒤쪽의 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 제출 시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증질지(80g/㎡)]

(뒤쪽)



**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 제출 시 참고사항**

1. 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이 피해자가 아닐 때에는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에게 이의신청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4. 이의신청 시 작성할 지면이 부족하면 별지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5. 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에는 아래 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 제출 시 첨부서류 각 호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와 유해발굴감식위원회에서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그 밖에 재산상 손실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도면, 사진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 제출 시 첨부서류**

1. 토지의 피해 평가내용
2. 과수의 피해 평가내용
3. 목축의 피해 평가내용
4. 임목의 피해 평가내용
5. 농작물의 피해 평가내용
6. 공작물의 피해 평가내용
7. 그 밖의 사유에 해당하는 손실 평가내용 등

※ 첨부서류는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Memo**

A large, empty, light green rounded rectangular area intended for writing a memo. The area is completely blank, with no text or markings inside.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MND Agency for KIA Recovery & Identification

그들을  
조속  
품으로

<기획 / 편집>

유가족관리과장 김영선  
유가족찾기팀장 남상호  
탐 문 담 당 김경환

6·25 전사자 발굴유해 신원확인을 위한

## 유가족 DNA 시료채취 업무 안내서

2026년 4월 24일 발행

편집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발행 대한민국 국방부

간첩·테러범 방산스파이 사이버테러·군사보안  
신고·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37**  
(온라인 신고 [www.dsc.mil.kr](http://www.dsc.mil.kr))

병영생활고충, 군범죄·성폭력, 방위사업비리 신고상담은  
국방헬프콜 ☎1303(군·공중 일반·휴대전화 등 모든 전화로 통화 가능)  
[인트라넷, 인터넷, 모바일 신고상담시 검색창에서 "국방헬프콜" 입력]

이 책자는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 관련 발굴된 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한 용도로 활용하며  
목적 외 사용을 금합니다.

6·25전사자 유가족 DNA 시료채취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유가족관리과로 연락바랍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

호국영웅의 소재를 제보해주세요!

▶ **제보대상**

- 6·25전쟁 당시 전사한 국군, 경찰, 학도병, UN군 유해

▶ **제보내용**

- 6·25전쟁 당시 전사자 직접 매장, 목격 또는 들은 내용
- 군복무 시절 전사자 유해, 유품을 목격했거나 들은 내용
- 일상 활동(영농, 등산, 약초채취 등) 및 각종 공간간 전사자 추정유해, 유품을 직접 발견했거나 들은 내용

유해소재 제보시  
최대 70만원 포상금

쉽고 빠른 유가족 유전자 시료 채취

▶ **참여대상**

- 전사자 유해를 찾지 못한 친·위가족 8촌 이내 유가족

▶ **참여방법**

- 가까운 보건소(지소) 군병원, 예비군부대, 병무청, 보훈병원(요양원), 적십자병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서울현충원내) 방문채취
- 생업이 바쁘시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유해발굴감식단 직원이 가정을 직접 방문합니다.

▶ **준비서류(증빙자료)**

- 제적등본, 유족증사본, 전사통지서사본, 병적증명서 등(택일)

▶ **포상금 지급**

- 시료채취 참여시 1만원 상품권
- 전사자 기준 최초 채취 - 유가족 인정 시 10만원 포상금

전사자 신원 확인시 1,000만원 포상금



대한민국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MND Agency for KIA Recovery & Identification

1577-5625 (24.6.25)

그들을 조국의 품으로